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2호

2011.1



세법연구센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2호

2011. 1

세법연구센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 1 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EU의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

1. EU의 과다적자 시정절차	14
2. 주요국의 세수확대를 위한 조세정책	15
가. 독일	15
나. 프랑스	17
다. 영국	20
라. 스페인	22
마. 포르투갈	24
바. 그리스	29
사. 아일랜드	31
아. 이탈리아	32
자. 아이슬란드	32
차. 폴란드	34
카. 핀란드	35
타. 헝가리	37
3. EU의 세수확대 조세정책에 관한 시사점	39
가. 유럽연합의회에 의한 재정 건전성 감시·감독	39
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인 긴축패키지에 세제개정 포함	39
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소비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	40
라. 은행세 등 금융관련 조세 도입	41
마. 세수확대를 위한 환경관련 조세 신설	42
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는 유지·강화	42

제 2 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45
가.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45
나.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47
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50
라.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	53
마.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감세연장법안 승인	55
2. 캐나다	58
가. 캐나다의 부가가치세 체계 및 최근 동향	58
나.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60

II 유럽

1. 그리스	65
가. 그리스의 세제개혁 및 경과	65
나. 그리스 추가 긴축재정 계획	72
2. 네덜란드	74
가. 네덜란드 지분면제제도 적용요건 완화	74
나. 네덜란드 톤세 적용 대상선박 확대	75
다. 네덜란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안 및 원천징수세율 개편	77

라. 네덜란드의 2011년 세법개정안	79
마. 네덜란드의 외국 혼성체에 대한 과세요건	81
3. 뉴질랜드	85
가. 뉴질랜드 의회 세법개정법안 승인	85
4. 덴마크	88
가. 덴마크 소득세법 개정	88
5. 독일	89
가. 독일 긴축패키지 내각 승인	89
나. 독일 하원, 은행세 도입안 등 승인	91
6. 룩셈부르크	92
가. 룩셈부르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92
7. 스위스	94
가. 스위스 부가가치세 간소화 추진	94
나. 스위스 추계 과세제도 개정	95
8. 스웨덴	97
가. 스웨덴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97
9. 스페인	98
가. 스페인의 주요 세제개혁 내용	98
나.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 조세조치	101
다. 스페인 모범조세관행규칙 제정	102
라. 스페인 정부 2011 예산안 확정	104
10. 아이슬란드	106
가. 아이슬란드 법인 및 개인 지원 세법개정	106
나. 아이슬란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108

11. 아일랜드	109
가. 아일랜드 부가가치세율 인상계획	109
12. 영국	110
가. 영국 새 정부의 조세계획(Tax Plans)	110
나. 영국 긴급예산 의회제출	113
다. 영국 조세간소화국 설립	117
라.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119
마. 영국 국세청의 사업계획(HMRC business plan)	120
13. 오스트리아	121
가. 오스트리아 상원, 2011-2014 보충 예산법 승인	121
14. 이탈리아	124
가. 이탈리아의 5,000유로 초과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	124
나. 이탈리아, 피지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125
15. 포르투갈	127
가. 포르투갈 추가 건축계획 의회 제출	127
나. 포르투갈 예산안 의회 제출	129
16. 폴란드	132
가. 폴란드 2011-2013 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132
나. 폴란드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등	133
17. 프랑스	134
가. 프랑스의 EIRL 도입	134
나.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지침 발표	135
다. 프랑스 각료회의의 2011년 재정법 채택	137

18. 핀란드	140
가. 핀란드 2011 예산안 발표	140
19. 헝가리	141
가. 헝가리 의회 세제개편안 승인	141
나. 헝가리 의회 위기세제 승인	142
20. 호주	144
가. 호주의 2010/11 예산안	144
나.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	148
21. OECD의 Taxing Wages: 2009년 근로소득세 감소 동향	149

Ⅲ

아시아

1. 대만	155
가. 대만 입법부 산업혁신촉진법 승인	155
나. 대만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156
다. 대만의 보험보상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의 개정	157
2. 일본	159
가. 일본의 그룹법인세제	159
나. 일본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이 제출한 세제개정안	161
다. 일본의 담배소비세 40% 인상	166
3. 중국	169
가. 중국의 자원세 확대 방안	169
나. 중국의 환경세 도입 논의	169
다.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	171

제1부 표 목차

〈표 I-1〉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정부부채 추세	12
〈표 I-2〉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 현재)	24
〈표 I-3〉 그리스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년 3월 현재)	30
〈표 I-4〉 그리스의 2010년 부가가치세율 변천	31
〈표 I-5〉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구분	35
〈표 I-6〉 헝가리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38

제2부 표 목차

〈표 I-1〉 주정부의 PST 세율	59
〈표 II-1〉 그리스의 소득세 과표구간(2010)	69
〈표 II-2〉 부양자녀공제가 변경 내용	69
〈표 II-3〉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도입	72
〈표 II-4〉 그리스의 2010년 부가가치세율 변천	73
〈표 II-5〉 개정 전·후의 소득세율 비교	85
〈표 II-6〉 부가급여세율 개정 전·후 비교	86
〈표 II-7〉 덴마크의 자녀수당	88
〈표 II-8〉 스웨덴의 사회보장기여금	98
〈표 II-9〉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세율	104
〈표 II-10〉 아이슬란드의 채무면제액의 과세면제비율 :개인	107
〈표 II-11〉 영국의 법인세율	114
〈표 II-12〉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1)	119
〈표 II-13〉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4)	120

〈표 II-14〉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	128
〈표 II-15〉 포르투갈의 원천징수세율	128
〈표 II-16〉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134
〈표 II-17〉 2009년 소득세율	138
〈표 II-18〉 헝가리의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143
〈표 II-19〉 헝가리의 법인세율	143
〈표 II-20〉 OECD 국가의 근로소득 관련 조세	150
〈표 III-1〉 담배 관련세 개정 전·후의 비교	166
〈표 III-2〉 우리나라의 담배세율	167

그림 목차

[그림 III-1] 신정부세제조사회가 신설된 후 세법결정과정	165
---	-----

I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EU의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

- 2008년 이후 EU 회원국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됨
 - 대부분의 경기부양책은 단기간인 2009년과 2010년에 일시적으로 집중됨
 - 또한 대부분의 경기부양책은 2011년에 종결됨

- 증가된 재정지출로 인해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정부부채도 크게 증가됨
 - 2007년~2010년 사이 EU 27개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20.8%p 증가
 - 같은 기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6.4%p 증가하였음
 - 특히 EU 27개 국가 중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영국은 2009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를 초과하였음
 - 이 국가들은 2010년에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아일랜드, 라트비아,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 5개 국가는 2007~2010년 사이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5%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7년~2010년 사이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1970년대, 1980년의 석유파동(oil shock)에서 찾을 수 있음

〈표 1-1〉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정부부채 추세

(단위 : %)

국가	재정적자/GDP				정부부채/GDP			
	2007	2008	2009	2010(E)	2007	2008	2009	2010(E)
벨기에	-0.2	-1.2	-6.0	-5.0	84.2	89.8	96.7	99.0
독일	0.2	0.0	-3.3	-5.0	65.0	66.0	73.2	78.8
아일랜드	0.1	-7.3	-14.3	-11.7	25.0	43.9	64.0	77.3
그리스	-5.1	-7.7	-13.6	-9.3	95.7	99.2	115.1	124.9
스페인	1.9	-4.1	-11.2	-9.8	36.2	39.7	53.2	64.9
프랑스	-2.7	-3.3	-7.5	-8.0	63.8	67.5	77.6	83.6
이탈리아	-1.5	-2.7	-5.3	-5.3	103.5	106.1	115.8	118.2
룩셈부르크	3.6	2.9	-0.7	-3.5	6.7	13.7	14.5	19.0
네덜란드	0.2	0.7	-5.3	-6.3	45.5	58.2	60.9	66.3
오스트리아	-0.4	-0.4	-3.4	-4.7	59.5	62.6	66.5	70.2
포르투갈	-2.6	-2.8	-9.4	-8.5	63.6	66.3	76.8	85.8
슬로베니아	0.0	-1.7	-5.5	-6.1	23.4	22.6	35.9	41.6
핀란드	5.2	4.2	-2.2	-3.8	35.2	34.2	44.0	50.5
말타	-2.2	-4.5	-3.8	-4.3	61.9	63.7	69.1	71.5
사이프러스	3.4	0.9	-6.1	-7.1	58.3	48.4	56.2	62.3
슬로바키아	-1.9	-2.3	-6.8	-6.0	29.3	27.7	35.7	40.8
EA-16	-0.6	-2.0	-6.3	-6.6	66.0	69.4	78.7	84.7
불가리아	0.1	1.8	-3.9	-2.8	18.2	14.1	14.8	17.4
체코공화국	-0.7	-2.7	-5.9	-5.7	29.0	30.0	35.4	39.8
덴마크	4.8	3.4	-2.7	-5.5	27.4	34.2	41.6	46.0
에스토니아	2.6	-2.7	-1.7	-2.4	3.8	4.6	7.2	9.6
라트비아	-0.3	-4.1	-9.0	-8.6	9.0	19.5	36.1	48.5
리투아니아	-1.0	-3.3	-8.9	-8.4	16.9	15.6	29.3	38.6
헝가리	-5.0	-3.8	-4.0	-4.1	65.9	72.9	78.3	78.9
폴란드	-1.9	-3.7	-7.1	-7.3	45.0	47.2	51.0	53.9
루마니아	-2.5	-5.4	-8.3	-8.0	12.6	13.3	23.7	30.5
스웨덴	3.8	2.5	-0.5	-2.1	40.8	38.3	42.3	42.6
영국	-2.8	-4.9	-11.5	-12.0	44.7	52.0	68.1	79.1
EU-27	-0.8	-2.3	-6.8	-7.2	58.8	61.6	73.6	79.6

자료: Public Finances in EMU-2010, European Commission, 2010. 4.

- EU 이사회(EU Council)는 2009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한 9개 회원국(벨기에, 체코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하여 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시작단계인 과다적자 개선권고(Recommendation on corrective action)를 채택함¹⁾
 - 과다적자 시정절차에 따르면 과다적자 개선권고 후 특정 기한까지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거나 이를 벌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EU 이사회는 이들 국가에 대해서 재정적자 감축기한을 제시함
 - 재정적자 감축기한은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감소시켜야 하는 최종기한임
 - 재정적자의 확인과 과다적자 개선권고의 채택은 각각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art. 126.6과 art. 126.7에 의한 것임
- 또한, EU 이사회는 2008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 이미 과다적자 시정절차가 진행중인 5개국(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에 대해서는 악화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정된 재정적자 감축기한을 제시하였음²⁾
 -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의 경우 2009년 4월에, 그리고 영국의 경우 2008년 7월에 과다적자 시정절차(EDP)가 시행되었음
- EU 이사회는 2009년 재정적자로 인해 과다적자 시정절차(EDP)의 대상으로 선정된 9개 회원국의 재정적자 감축기한과 경제 악화로 인해 재정적자 감축기한이 조정된 5개 회원국의 재정적자 감축기한은 다음과 같음³⁾
 -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⁴⁾ : 2012년까지
 - 체코공화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2013년까지
 - 아일랜드 : 2014년까지
 - 영국 : 2014-15년까지

1) 16884/09 (Press 356), 'Council ope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s for nine member states and follows up its recommendations to five other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12.2.

2) 16884/09 (Press 356), 'Council ope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s for nine member states and follows up its recommendations to five other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12.2.

3)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11688.pdf

4) http://ec.europa.eu/news/economy/100203_2_en.htm

- 재정적자의 증가와 정부부채의 증가는 EU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EU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세수를 증가시키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1. EU의 과다적자 시정절차

- EU 이사회는 경제통합을 위하여 개별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제도인 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적용을 명령할 수 있음
- 과다적자 시정절차란 안정·성장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거하여 EU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제도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취해지는 제도
 - 과다적자 시정절차가 적용되는 요건 : 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거나, ②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야 함
 - 다만,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다적자 시정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성장협정은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로존에 참여하는 EU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임
 - 경제통화연합이 1997년 도입된 안정·성장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함
 - 유로를 도입한 회원국은 마스트리히트 수렴조건(Maastricht Convergence 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하고 안정·성장협정에 의거, 동 수렴조건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감시받고 있음
 - 마스트리히트 수렴조건은 물가, 재정, 금리, 및 환율 조건으로 구성됨

- 물가 :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 +1.5%p 이내
 - 재정 : 재정적자가 경상 GDP의 3% 이내이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GDP의 60% 이내
 - 금리 :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 명목장기 금리 +2.0%p 이내
 - 환율 : 최소 2년간 자국화 환율을 ERM II의 환율 변동 허용폭(고정중심환율 $\pm 15.0\%$) 이내로 유지
 - 안정·성장협정에 의거, 회원국이 실제로 따라야 할 요건은 마스트리히트 수렴 조건 중 재정 조건임
 - 즉, ① 재정적자/GDP 비율이 3% 이하이어야 하고, ② 정부부채/GDP 비율이 60%에 미달하여야 함
- EU 이사회는 과다적자 시정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재정적자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재정적자 시정조치의 계획에 대한 일정을 수립함
- EU 이사회는 과다적자 시정절차의 수행을 감시하고, 과다한 재정적자 또는 정부부채의 문제가 시정되면 과다적자 시정절차의 수행을 중단함
 - 회원국이 과다적자 시정절차의 수행에 실패할 경우, EU 이사회는 재무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주요국의 세수확대를 위한 조세정책

가. 독일

1) 개관

- 독일 내각(cabinet)은 2010년 6월 7일 재정지출 삭감을 비롯하여 세제분야에서 원자력 발전소 및 비행기 여객에 대한 과세 신설, 에너지세 특혜조치 폐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승인함

-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현재 GDP의 5% 수준으로 EU 안정·성장협정(EU Growth and Stability Pact)에서는 이를 2013년까지 3% 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긴축패키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4년 동안 약 85억유로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는 2011년 11.1억유로, 2012년 16.1억유로, 2013년 25.7억유로, 2014년 32.4억유로로 추산됨
 - 긴축패키지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대부분 실업수당, 자녀보조금 등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지출 축소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하원(Bundestag)은 2010년 10월 28일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은행세의 도입, 재정 회복을 위한 비행기 여행세 도입 및 담뱃세 인상 법안을 승인함

2) 소득세제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을 계획

3) 소비세제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나 에너지세 및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한 출발세 등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킬 예정임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에너지세에 관한 특혜조치는 폐지되고 시설의 가용시간을 연장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에너지세는 추가될 예정임
- 이를 통해 연간 약 2.3억유로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해서는 환경세(environmental tax) 중 하나인 출발세(departure tax)를 부과할 계획임
- 출발세는 독일 공항을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 부과하며, 그 세율은 비행기의 소음 수준 및 연료소비량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단, 비행기 부문이 2010년 EU 배출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 출발세는 폐지될 것임
-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유로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4) 기타세제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컴퓨터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신설
 - 동 거래세의 경우 은행세와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연간 2억 유로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독일 하원은 2010년 10월 28일에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구제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은행세의 도입을 승인함
 - 은행세의 적용 대상은 민간은행, 국영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건축조합(building society)임
 - 은행세는 은행의 규모, 체계적 위험,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중앙은행(Bundesbank)과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임
 - 은행세 세수는 연간 10억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금융위기에 금융기관의 구제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임
- 독일 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함
 - 흡연자의 감소, 저가 및 밀수 담배의 선호로 줄어든 담뱃세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나. 프랑스

1) 개관

-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수를 증가시키는 세제개정을 2011년 재정법을 통하여 수행함

- 프랑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9월 29일에 2011년 재정법(Finance Bill)을 채택하였음
 - 2011년 재정법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budget deficit)를 GDP의 3%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증세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조세혜택과 조세제도상의 허점(loophole)을 감소시키고, (ii) 특정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킴

2) 소득세제

-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자본이득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특히, 관련 소득의 경우 장기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를 손금에 일률적으로 산입하거나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보험회사가 설정한 준비금(reserve)에 관하여 전액 손금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보험회사 설정 준비금은 10%의 저율로 과세하게 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설정한 준비금의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함
-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R&D세액 환급제도를 상시적으로 모든 법인에 허용함
 - R&D세액 환급제도 : 적격한 R&D 지출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하여 R&D 세액을 즉각적으로 환급하는 제도
-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현행 40%에서 41%로 인상됨
 - 2009년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과세소득구간(유로)			세율
0	~	5,875	0
5,875	~	11,720	5.5%
11,720	~	26,030	14%
26,030	~	69,783	30%
69,783	초과		40%

- 분리과세 선택 시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8%에서 19%로 인상됨
 -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18%의 일률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인상됨
 - 프랑스의 경우, 자본이득은 일률과세(flat tax)함
 - 유가증권 등 동산의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8%에서 19%로 인상됨
 -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인상됨

- 면세 가능한 동산의 소액자본이득에 관한 면세가능 한도의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25,830유로 이하 동산의 소액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음

- 주된 거주지 관련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된 거주지의 건설·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프랑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부담금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함

3) 소비세제

- TV, 전화, 및 인터넷 통합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인 19.6%로 확정하여 통합서비스에 대한 세율을 명확하게 규정함
- 현행 세법에서는 통합서비스에 포함된 일부 개별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경감세율인 5.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이 명확하지 않았음

다. 영국

1) 개관

-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긴급예산(Urgent Budget)을 2010년 6월 22일에 발표함
-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긴급예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156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결손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증세정책을 추진하되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인하한다는 것임
- 주요 개정 사항은 보수당-자민당 연정(Tory-Liberal Democrat coalition)은 2010년 5월 20일 은행세 도입 및 법인세제 간소화 등임

2) 소득세제

- 긴급예산에 따르면 법인세상 각종 공제·감면을 축소하여 세수 확대와 세제간소화를 이룸
- 다만,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은 3%p 인하 정책을 추진함
- 각종 공제 등을 축소할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제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중임
- 긴급예산에 따르면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의 경우 공제율을 현 20%에서 12.5%로 인하할 계획임

- 긴급예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
 - 현행 기본인적공제 금액은 6,475파운드임
 - 2011년 4월부터 저소득층 및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이를 인상하여 장기적으로는 1만파운드까지 인상함
- 긴급예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관련 재원은 비사업자의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고, 국민보험료의 과세최저한을 인상할 계획임
 - 비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 18%에서 40% 또는 50% 정도까지 인상함
 -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18%의 자본이득세율을 유지함
 -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와 관련하여 고용주 부담분에 한해 과세최저한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

3) 소비세제

- 긴급예산에 따르면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현 17.5%에서 20%로 인상됨
 - 이로써 약 11.5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가계 지출에 약 425파운드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승객세(per-passenger levy)를 폐지하고 이를 비행기세(per-plane charge)로 대체함
 - 비행기 여객산업의 과세체계 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임

4) 기타세제

- 환경과세(environmental taxation) 분야의 세수를 확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를 재검토할 계획임

라. 스페인

1) 개관

-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10년 5월 12일 15억유로 규모의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발표함
 - 긴축패키지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정과 함께 공공부문 급여의 인하 및 동결, 출생 및 입양 지원 폐지, 공공투자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스페인 정부는 증세정책을 골자로 하는 2011 예산안(Budget for 2011)을 2010년 9월 24일에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1 예산안은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최고세율 인상,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의 증세 정책과 아울러 법인세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소득세제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과세기간 중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2,500유로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 단, 2010년 발생한 출생 및 입양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1일 이전 등록을 요건으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출생 및 입양 자녀당 지급하는 2,500유로의 보조금을 폐지함
 - 단, 2010년 발생한 출생 및 입양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1일 이전 등록을 요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음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공제혜택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함
 - 개인소득세 세율에서 현 43% 구간 외에 44% 및 45% 구간을 추가함

과세소득(유로)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 17,707.20	24	
17,707.20 ~ 33,007.20	28	
33,007.20 ~ 53,407.20	37	
53,407.20 ~ 120,000	43	43
120,000 ~ 175,000		44
175,000 ~		45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정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 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30만유로로 제한함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된 거주지의 취득 및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세소득이 24,170.20유로 미만인 납세자로 제한함
 - 이는 거주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에도 적용될 예정임
- 반면에 2011년 예산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포함되어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800만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은 요건 충족 시 자유상각 및 가속상각 허용, 과세소득 중 처음 120,202.41유로에 대해 25%의 세율(일반 법인세율 30%) 적용,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 10%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세(capital duty)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 내국법인의 자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본세가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2011년 및 2012년 동안 자본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함

마. 포르투갈

1) 개관

-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2차에 걸친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1차 긴축패키지는 2010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건임
 - 최고소득세율의 인상, 과세대상 소득의 확대 등 재정수입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함
 - 2차 긴축패키지는 2010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된 건임
 - 법인세율의 인상, 소득세율의 인상 등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확대를 목표로 함
- 포르투갈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등 재정수입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2) 소득세제

- 1차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함
 - 15만유로 이상의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현재 42%에서 45%로 인상

〈표 1-2〉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 현재)

(단위: 유로)

과세표준 ¹⁾	세율(%)
~ 4,793	10.5
4,793 ~ 7,250	13
7,250 ~ 17,979	23.5
17,979 ~ 41,349	34
41,349 ~ 59,926	36.5
59,926 ~ 64,623	40
64,623 ~ 150,000	42
150,000 ~ ²⁾	45 ²⁾

주: 1) 과세표준 구간은 2010 포르투갈 예산안에서 확대 개편되어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됨

2) 3월 15일 재정적자감축 계획안에 추가된 구간과 세율

자료: Portugal, Individual Taxation, IBFD

-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이득이 연간 500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이득세(세율 20%)를 부과함
 - 연간 연금소득 22,500유로 이상에 대해서 적용되던 공제액(현재는 6,000유로)이 감소됨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정책 분담금과 관련된 공제혜택 폐지
- 2차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연간 200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5%p 인상함
- 이전에는 과세소득 중 처음 12,500유로에 대해서는 1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
- 2차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1차 긴축패키지에 이어서 개인소득세율 구간을 개정함
- 개인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중 세 번째 구간까지는 1%p, 네 번째 구간부터는 1.5%p 인상함
 - 단, 이는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10년의 경우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월할 조정될 예정임

과세표준(유로)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2010년	2011년 이후
~ 4,793	10.5	11.08	11.5
4,794 ~ 7,250	13	13.58	14
7,251 ~ 17,979	23.5	24.08	24.5
17,980 ~ 41,349	34	34.88	35.5
41,350 ~ 59,926	36.5	37.38	38
59,927 ~ 64,623	40	40.88	41.5
64,624 ~ 150,000	42	42.88	43.5
150,000 ~	45	45.88	46.5

○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1.5%p 인상함

항목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15	16.5
열거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20	21.5
거주자인 개인의 투자소득	20	21.5
비거주자인 개인의 근로, 직업, 연금, 투자소득	20	21.5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중간예납세율을 현 75%에서 76.5%로 1.5%p 인상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및 농부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75%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는 최종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7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을 마감일로 하여 3회에 걸쳐 각각 총중간예납세액의 1/3씩 납부되어야 함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소득공제 사항을 감소시키는 등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과세특례(tax incentives) 총액한도를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의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의 75%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에 총액한도를 두고 있음
- 또한 총액한도를 적용받는 과세특례 항목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열거되지 않은 모든 항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으로는 연구개발, 자유지역, 세율인하, 고용창출, 지주회사, 벤처캐피탈 관련 과세특례가 있음

○ 법인 간 배당시 적용되는 배당소득공제 중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50%의 공제를 폐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거주 법인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i) 수취법인이 도관

- (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지 않고 ii) 배당금 수취법인이 배당 전 1년 동안 배당금 지급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또는 보유 지분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20million 이상인 경우) 완전면세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10%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당소득을 완전면세하는 대신 50% 만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이 외에도 2011 예산안에서는 증세를 위해 법인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혜택을 제한
 - 대손금(bad debts) 및 주식양도이익의 재투자자에 대한 공제를 제한함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청산절차(prior clearance procedure)를 도입함
 - 결손금 공제는 법상 요건에 따라 감사인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그룹법인 간의 결손금 통산은 그룹법인 간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제한을 받게 함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소득과 관련하여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금소득공제 금액의 하향조정 및 각종 공제금액에 한도 도입 등의 증세 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하향조정함
 - 현행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6,000유로로, 연금소득이 30,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3%의 비율로 공제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연금소득이 22,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의 비율로 공제금액을 줄일 방침임
 - 24.5% 이상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금액에 한도를 도입함
 - 금액한도 적용대상 공제항목으로는 생명 및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훈련비, 주택구입 이자, 자산관련 비용, 연금저축 납입액, 건물 개조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용 및 재생에너지 장비 구입비용 공제가 있음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또는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
 - 개인소득세 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을 2.2% 확대함

- 예를 들어, 독신자인 개인의 경우 46.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개시 금액은 기존 15만유로에서 153,300유로로 인상됨
- 주주 대여금 이자에 대한 과세를 종합 누진과세에서 21.5%의 단일세율 과세로 전환함

3) 소비세제

- 2차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현행 20%에서 21%로 1%p 인상됨
 - 포르투갈에서는 재정결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 왔음
 - 2005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8%에 달하자 그 해 부가가치세율을 2%p 인상(19%→21%)한 바 있음
 - 한편, 2006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9%, 2007년 GDP의 2.6%로 감소하자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인하(21%→20%)하였음
- 2차 긴축패키지 이후 2011년 예산안에서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하고 일부 경감세율 항목을 표준세율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 세수확보를 목표로 함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차 긴축패키지에서 인상된 21%에서 다시 23%로 인상함
 - 일부 재화(주로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해서는 6%(또는 13%)의 경감세율 대신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4) 기타세제

-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에 대해서는 특별과세를 도입함
 - 적용대상은 국내 신용기관 및 해외 신용기관의 국내지점임
 - 납부세액은 신용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금액에 기초하여 특정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0.01~0.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또한 일부 부외파생상품(out-of-balance derivatives)에 대해서는 0.0001~ 0.0002%

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 납부기한은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함

바. 그리스

1) 개관

- 그리스 국회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급한 세제조치를 담은 새로운 법률안을 2010년 3월 5일에 채택함
 - 이번에 내놓은 긴축안은 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4%, 100억유로)의 절반에 해당함
 - 긴축안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치세(luxury tax) 도입, 개별소비세 인상 등의 간접세 개정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기준액 및 최고세율 인상 등의 직접세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그리스 정부는 2010년 11월 18일에 추가 긴축재정(austerity measure)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함
 -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결손을 2011년 GDP의 7.4%로 대폭 줄여 EU/IMF 긴급구제 시 약속한 목표치인 7.6%를 초과 달성할 계획임
 - 궁극적으로는 유로존에서 정한 한도인 GDP의 3%를 달성할 계획임

2) 소득세제

- 3월 5일 긴축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과세구간 및 그 적용세율을 75,000유로에서 10만유로로, 40%에서 45%로 인상함
 - 변경 전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음

〈표 1-3〉 그리스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년 3월 현재)

(단위: 유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세 구간	세율	과세 구간	세율
-	-	10,500	0%
12,000	0%	15,000	15%
18,000	24%	18,000	24%
45,000	35%	45,000	35%
75,000 초과	40%	75,000 초과	40%

자료: Greece - Individual Taxation, IBFD

- 11월 18일 추가 긴축안에 따르면 세수확대 정책 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일부 조세 지원 정책 역시 계획되어 있음
 - 배당하지 않은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0%로 4%p 인하함

3) 소비세제

- 3월 5일 긴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치세(luxury tax) 도입, 개별소비세 인상 등의 소비세제 개정
 -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해서 기본세율과 경감세율이 모두 인상되었고(기본세율: 19 → 21%, 경감세율: 9 → 10%), 2010년 3월 15일부터 적용함
 - 특별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사치세(luxury tax)를 도입함
 -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excise duties)를 인상함
- 11월 18일 추가긴축재정(austerity measure)에 따르면 3월 5일 긴축안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함
 - 제3차 부가가치세 인상계획에 의하면 식품 및 의약품에 적용되는 11%의 경감세율을 2%p 인상하여 13%를 적용함

- 단, 23%의 표준세율과 서적 및 신문에 적용되는 5.5%의 최저세율은 유지할 방침임
-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행부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의 경우 현 11%에서 6.5%로 인하함

〈표 1-4〉 그리스의 2010년 부가가치세율 변천

구분	~ 2010.03.14	1차 인상: 2010.03.15 ~	2차 인상: 2010.07.01 ~	3차 인상안
표준세율	19%	21%	23%	23%
경감세율	9%	10%	11%	13% ¹⁾
최저세율	4.5%	5%	5.5%	5.5%

주: 1) 여행부문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11%에서 6.5%로 인하함

4) 기타세제

- 3월 5일 긴급안에 따르면 회사 소유의 국내부동산과 이러한 자산에 대한 용익권(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특별세를 3%에서 15%까지 인상함

사. 아일랜드

- 아일랜드에서는 급증하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 아일랜드는 2009년 부가가치세율을 0.5%p 인상한 바 있으나 주변국가인 영국과의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2010년 이를 다시 21%로 낮추었음
 - 아일랜드 정부는 이웃 나라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힘을 얻어 부가가치세율을 2%p 정도 인상(21%→23%)할 계획에 있음

아.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수상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2010년 5월 25일에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채택하였음
- 본 긴축패키지의 주요한 조치로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5,000유로를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임
 - 이탈리아 정부가 현금거래를 제한한 목적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이탈리아는 EU의 권고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2009년 말 현재 재정적자가 GDP의 5.3%에 달하여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였음
 - 특히, 이탈리아의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1만 2,500유로에 달하는 금액까지 현금거래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과도한 현금거래는 조세회피를 유발하여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회피된 조세를 확보하는 등의 긴축패키지를 통해 2012년까지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2.7%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 아이슬란드

1) 개관

- 정부가 2010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한 2011 예산안(Budget Bill for 2011)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과 아울러 재정지출 감소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은 2010년 7월 IMF가 발행한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아이슬란드의 재정 붕괴 이후 아이슬란드에 금융지원을 해 온 IMF에서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세수를 GDP의 2%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저세율 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음
 - 2011 예산안에서는 ISK 80억 규모의 신규 세수확보를 계획하며 IMF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외에 부유세·상속세·탄소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은 인상하지 않을 계획임

2) 소득세제

- 법인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비롯하여 환경 및 천연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과세를 도입함
 - 법인세 세율을 현 18%에서 20%로 2%p 인상함
 -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특별과세(special tax)를 도입함
 - 탄소제품(carbon products)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및 천연자원세(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tax)를 인상함
-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함
 -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 18%에서 20%로 2%p 인상함

3) 기타세제

- 상속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제도를 개편함
 - 상속세 세율을 현 5%에서 10%로 5%p 인상함
 - 부유세 과세제도(net wealth taxation regime)를 개정함
 - 개정 관련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차. 폴란드

1) 개관

- 폴란드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8월 4일 증세를 통한 재정결손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2011-2013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폴란드의 재정결손액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7.1%에 달함
 - 예산안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소비세 인상 및 도입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이 포함됨
- 폴란드 재무부는 2010년 10월 9일 재정법(Law on Public Finance) 개정안을 발표함
 - 이는 재정결손 회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및 개인소득세 공제항목의 일부 폐지 등의 증세정책을 담고 있음

2) 소득세제

- 10월 9일에 발표된 재정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함
 - 폐지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가족공제(family credit), 인터넷 공제(internet relief), 및 개인적으로 수행한 전문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또는 50%의 소득공제임.

3) 소비세제

- 폴란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소비세 인상 및 도입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계획임
- 재정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011년부터 22%에서 23%로 인상하고 경감세율은 3%, 7%에서 5%, 8%로 인상함

- 또한 2010년 공공부채(public debt)가 GDP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2012년과 2013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을 각각 1%p씩 추가 인상하여 2013년에는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공공부채의 규모는 2011년 5월에 발표될 예정임

〈표 1-5〉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구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1 ¹⁾	2012 ²⁾	2013 ²⁾
경감세율	3%, 7%	5%, 8%	6%, 9%	7%, 10%
표준세율	22%	23%	24%	25%

주: 1) 2011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확정됨

2) 2012 및 2013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는 2010 과세연도의 공공부채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예산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excise duties on cigarettes)를 2011, 2012 및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씩 인상함
- 예산안에 따르면 석탄 및 코크스에 대해 소비세(excise duty)를 도입함

카. 핀란드

1) 개관

- 핀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0년 7월 30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정책이 포함된 2011 예산안(budget proposal for 2011)을 발표함
-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2) 소득세제

- 2011 예산안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

3) 소비세제

- 소비세 분야에서 세원 발굴 및 특정 항목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사탕류, 초콜릿 및 아이스크림에 대해 0.95유로/kg의 소비세를 도입함
 - 청량음료(soft drinks)에 대한 소비세를 현 0.045유로/ l 에서 0.075유로/ l 로 인상함
 - 이는 현재 면세되고 있는 광천수(mineral water)에도 적용될 예정임
- 전기,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에 대한 에너지세(energy taxes)를 인상함
 - 또한 에너지세를 에너지 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함
 -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에너지세 인상으로 약 7억 5천만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4) 기타세제

-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폐기물세 및 복권세의 세율을 인상함
 - 2011년 3월 1일부터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함
 - 현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의 일반 소매가격에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음
 - 폐기물세(waste tax)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세율을 현 30유로/ton에서 2011년 40유로/ton, 2013년 50유로/ton으로 인상함
 - 복권의 상금에 대해 부과되는 복권세(lottery tax) 세율을 현 8.25% 또는 9.5%(복권 사업 주최자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에서 10%로 인상함

타. 헝가리

1) 개관

- 헝가리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중도우파 피데즈(Fidesz)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승인함
 - 세제개편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 도입, 공공부문 과다 보너스에 대한 중과세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헝가리 의회는 2010년 10월 18일에 위기세제패키지(crisis tax package) 법안을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자통신, 소매부문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es) 도입, 법인세 분야에서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돕고 재정결손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2) 소득세제

- 7월 22일 세제개편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HUF 200만을 초과하는 공공부문 보너스에 대해서는 98%의 세율로 과세함
 - 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수취분에 한함
- 10월 18일 승인된 위기세제패키지에 따르면 에너지(energy),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 소매부문(retail sectors)에 대해 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특별세(special taxes)를 도입함
 - 에너지 공급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1.05%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함
 - 전자통신 회사 및 소매부문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함

〈표 1-6〉 헝가리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에너지 부문	전자통신 부문		소매부문	
	수입금액(HUF)	세율(%)	수입금액(HUF)	세율(%)
1.05%	~ 5억	2	5억 ~ 300억	0.1
	5억 ~ 50억	4	300억 ~ 1,000억	0.4
	5억 ~	6.5	1,000억 ~	2.5

- 특별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는 지난 7월 통과한 금융세와 합산하여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간 HUF 3,430억으로 추산되고 있음
- 다만 위기세제패키지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을 포함함
 - 2013년부터 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을 도입함
 - 현행 법인세 표준세율은 19%로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2013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함

3) 기타세제

- 7월 22일 세제개편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세(bank tax)를 도입함
 - 은행세는 대차대조표 총액을 기준으로 HUF 50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0.5%, 이하인 부분은 0.15%의 세율로 과세함
 -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을 기준으로 6.2%의 세율로 과세함
 - 이는 9월 10일 및 10월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함
 - 정부는 은행세 부과로 약 HUF 2,000억의 추가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3. EU의 세수확대 조세정책에 관한 시사점

가. 유럽연합의회에 의한 재정 건전성 감시·감독

- 개별 EU 회원국의 재정적 안정성은 유럽의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감시·감독됨
 - EU는 경제통합을 위해서 개별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집단적으로 감시·감독하는 협약을 체결함
 - 경제통화연합(EMU)에 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장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안정·성장협정은 유럽의회가 회원국의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적 안정성에 위험이 발생한 회원국의 경우 유럽연합의회는 과다적자 시정조치(EDP)를 취할 수 있음
 - 과다적자 시정조치는 재정이 불건전한 EU 회원국의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계획의 수립을 도움
 -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간표(time table)를 설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인 긴축패키지에 세제개정 포함

- 몇몇 EU 회원국은 재정적자 축소에 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응책인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일반적으로 긴축패키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재정수입·재정지출의 증감에 관한 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긴축패키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시행될 조치에 대한 시간표(time table)를 포함하고 있음
 - 나머지 회원국은 예산안에 증세정책을 포함하여 발표함

- 긴축패키지를 발표한 국가는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임
 - 독일 : 2010년 6월 7일에 과세의 신설, 특례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영국 : 2010년 6월 22일에 증세정책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긴급예산을 발표함
 - 스페인 : 2010년 5월 12일에 세수증대와 공공투자 축소 등의 정책을 포함한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이탈리아 : 2010년 5월 25일에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을 포함한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그리스 : 2010년 3월 5일에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정책을 포함한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포르투갈 : 2010년 3월 15일, 5월 24일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등의 정책을 포함한 긴축패키지를 발표함
 - 헝가리 : 2010년 10월 18일 특별세 도입 등의 정책을 포함한 위기세제패키지를 발표함

- 긴축패키지는 재정지출·재정수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측면에서 재정적자의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됨
 - 또한 긴축패키지는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재정지출·재정수입에 관한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유지를 가능하게 함
 - 다만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정책의 경우, 실업수당이나 자녀보조금과 같은 사회보장적 지출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소비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

- EU 회원국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세제에 대한 개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한 소비세에 대한 개정이 많음
 - 특히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늘림

- 부가가치세율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경제위기가 큰 국가의 경우(예를 들어,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법인·개인 소득세 부담도 증가시킴

□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늘린 국가는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등임

- 영국 :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20%로 인상함
- 포르투갈 : 부가가치세율을 2010년 중에 20%에서 21%로, 다시 21%에서 23%로 인상함
- 그리스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0년 중에 3차에 걸쳐 기본세율을 19%에서 23%로, 경감세율을 9%에서 13%로 인상함
- 폴란드 : 부가가치세의 경우 표준세율을 22%에서 23%로, 경감세율을 현행 3%와 7%에서 각각 5%와 8%로 인상함

라. 은행세 등 금융관련 조세 도입

□ 경제위기를 유발한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세(부과금)를 도입함

- 은행세(은행부과금) 도입국가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헝가리
- 영국 :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12.9)하였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독일 : 은행부과금 도입을 위한 은행구조조정법안에 대해 대통령 서명 및 공포를 완료(12.8)하였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 스웨덴 :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정리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2009년 12월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부터 시행중
- 프랑스 :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재정 법안에 대해 2010년에 입법을 완료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헝가리 : 은행세의 형태로 2010년 7월에 도입함
- 포르투갈 : 신용기관의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특별과세를 도입함

- 특별과세는 대차대조표상 부채금액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에 대하여 부과하기도 함

□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신설함

- 독일 : 컴퓨터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등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

마. 세수확대를 위한 환경관련 조세 신설

□ 일부 EU 회원국은 세수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관련 조세를 강화하거나 신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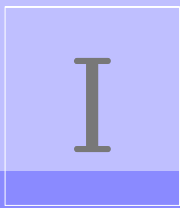
- 독일 :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해서 환경세 중 하나인 출발세를 부과함
 - 또한 에너지세에 대한 특례조치가 폐지될 예정
- 영국 : 승객세를 폐지하고 비행기세를 신설함
- 핀란드 : 전기·석탄·천연가스·석유에 대한 에너지세를 인상함
- 헝가리 : 에너지, 전자통신, 소매부문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세를 도입

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는 유지·강화

□ EU 회원국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유지·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 EU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함

- 독일 : 법인·개인 소득세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을 예정
- 프랑스 : R&D 환급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함
- 영국 : 법인세율을 3%p 인하함
- 스페인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함
- 그리스 : 법인세율을 4%p 인하함



미국 / 캐나다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조세동향 10-12]

- 미국은 2010년도 감면연장법안(extender bill, H.R.4213)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 법안은 2009년 12월 7일에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 12월 9일에 하원에서 법안을 가결하였고, 2010년 3월 10일에 상원에서 법안을 가결하였음
 - 현재는 양원합동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양원이 가결한 법안을 조율하고 있음⁵⁾
 - 2010년 6월 9일 상원에서 하원과 조율하기 위해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이 법안의 목적은 실업수당을 늘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무상 허점을 방지하는 입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이 법안은 1986년 IRS Code 중 만기되는 규정을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감면연장법안임
 - 2010년 11월 30일에 만기되는 실업혜택 및 의료혜택을 연장하여 실업수당을 늘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늘림
 - 이 법안의 총지출은 1,270억달러로 추산되며 부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상 허점을 방지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5)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은 차이가 있으며, 차이가 나는 법안은 양원합동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도출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법안은 폐기됨

- 이 법안에 포함된 세제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세제,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세제, 세무상 허점 보완을 위한 세제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세제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이 있음
 -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연장에 66억달러를 지원하여 11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특정 부동산에 48억달러를 지원하여 29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소득이 낮은 집단(예를 들면 신규 시장에 진입한 집단 등)의 사업에 38억달러를 지원함
 - 미국 다국적 사업의 세계적인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44억달러를 지원함
 -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세제는 근로가정에 대한 면제를 연장하고 개인세금을 감면함
 - 주와 지방정부의 판매세(sales tax deduction)를 손금산입하여 1,200만 가구에 16억달러를 지원함
 - 손금산입할 수 있는 수업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4,400만 가구에 16억달러를 지원함
 - 교사가 지출하는 수업을 위한 비공식적인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360만 교사에게 2억달러를 지원함
 - 재산세에 추가적인 표준공제를 제공하여 3,000만 주택소유자에게 15억달러를 지원함
 - 세무상 허점 보완을 위한 세제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한 개정이 포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에 맞추어 소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득(예를 들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 조세조약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소득 등)을 분리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억 5,3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남용방지규정(sec.956)을 조작하는 것을 막음으로서 향후 10년에 걸쳐 10억 1천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외국에 근거한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 내 외국자회사가 외국 모회사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에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억 5,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자회사에 이자분배를 조작하는 것을 방

- 지하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4억 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투자펀드관리자의 성과보수(carried interests)는 투자펀드관리자가 직접 펀드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수 있었던 허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
-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했던 것에 비하여 저율의 세율로 과세되었음
- 이를 방지하여 75%는 통상소득으로 과세하고 25%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양원합동세제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이 방안을 통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187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나.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조세동향 10-17]

1)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 개요

- 2010년 8월 10일 미국 의회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와 그 밖의 국제조세조항의 개정내용이 포함된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01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본 법이 발효됨
- 이 법은 교원과 건강보험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교원들을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및 건강보험을 위한 161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319,000개의 일자리가 유지 및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들의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 규정들을 폐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신청을 관련 해외소득의 과세시기 이전에 청구하는 것을 금지시킴

- 의회에서는 이번 법률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14억달러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개정 배경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외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부담을 미국 정부에 넘기도록 세무계획을 세우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은 미국 정부나 외국 정부에 대하여 사실상 조세부담을 지지 않고 조세를 회피하는 부작용들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일자리들이 미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세법의 허점은 미국 국세청에서 대기업 납세자들에 대한 최대 해결과제로 논의되어 왔음
 - 2004년에는 미국 글로벌기업들이 외국에서의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 7천억 달러 중 실질적으로 2%만을 미국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법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예산안 발표에서 주요한 국제조세 개혁방안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며, 국회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2010년 8월 10일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11년부터 본 법은 발효됨
 - 이러한 국제 조세개혁은 1962년 케네디 행정부의 ‘subpart F’ 규정 제정 이래 국제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가장 의미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국회에서는 이번 국제조세 개정을 통하여 약 98억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주요 개정내용

-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신청을 관련 해외소득의 과세시기 이전에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됨
 - 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개정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42억 5천만달러의 조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내국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이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자산으로는 내국세법 § 338(d)(3)의 적격주식구입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이 규정을 통하여 국회에서는 36억달러의 조세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 원천징수에 대한 특별규정인 '80/20 company 규칙'을 폐지함
 - '80/20 company 규칙'이란 80% 이상의 총소득이 적극적인 해외사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와 배당금은 외국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임
 - 이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1억 5,100만달러의 조세수입이 예측되고 있음
- 특정 외국 거래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함
 - 국경을 넘는 거래나 외국의 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인정되었던 소멸시효 연장을 개별적으로 제한함
- 미국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소득으로 간주되는 미국원천소득들을 항목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회피를 위하여 외국 지사나 외국 회사들에 해당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함
 - 이 규정을 통하여 2억 5천만달러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 미국소득과 외국소득 간의 이자비용을 조정하는 행위를 제한함
 -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이자비용을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이자비용 계산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 기업을 국내의 계열사기업으로 보아 외국 기업의 모든 자산과 이자비용을 같은 계열사 그룹의 이자비용 계산에 포함시킴
 - 이 규정을 통하여 3억 9천만달러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조세동향 10-19]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9월 8일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 연설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음
 - 기업들의 R&D 비용에 대한 영구세액 공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100% 세액공제, 그리고 향후 6년간의 500억달러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SOC 확충계획을 의회에 제안하였음
 - 또한 2001년과 2003년 감세정책의 연장법안을 개인의 경우 2만달러 미만, 부부합산의 경우 2만 5천달러 미만의 계층을 대상으로 연장하겠다고 제시함

1) 기업들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R&D 투자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세액공제 기한을 영구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안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 이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000억달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세수 감소는 다른 기업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하여 상쇄할 계획임

2) 기업들의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향후 2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로 기업 투자비용에 대한 감세혜택 제공 방안도 발표하였음
-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컴퓨터와 발전기 등 각종 설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발표당일인 8일부터 소급적용해 2011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시행하겠다고 제안함

3)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계획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6년 동안 사회간접자본(SOC)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SOC 확충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5만마일의 도로와 4,000마일의 철도가 확충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비 조달을 위하여 그동안 석유와 가스회사에 주어졌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일 예정임
- 미국 정부는 SOC 투자 10억달러당 3만 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부유층 감세연장 중단

-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행되던 감세정책의 일몰시간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세금 감면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옴
- 9월8일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만 5천달러 미만의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함
-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 연장과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 국민 중 2%에 불과한 연소득 2만 5천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부시 행정부의 대부분 조세감면규정 내용들은 일몰규정으로 2011년과 2012년에 만료됨

- 조세제도가 입법화된 주된 법률은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 조화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과 '2003년 일자리와 성장 조세감면 조화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임
- 이 두 개의 법률은 소득, 장기자본이득과 배당금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아동 세액공제 등의 특별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 조화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서는 소득별로 각각 10%, 15%, 25%, 28%, 33%, 35%의 여섯 단계의 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만일 조세감면 규정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2001년의 세율로 되돌아가게 되며, 34,550달러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적용되었던 10%의 최저세율이 15%로 상승됨
- 그 외의 소득층들도 각각 28%, 31%, 36% 39.6%로 세율이 모두 상승됨

□ 이러한 부자에 대한 감세연장 불허를 통하여 오바마 정부는 재정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블룸버그(Bloomberg) 조사에 의하면 부자들에 대한 세액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당장 내년에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로부터 310억달러, 50만~100만 달러 부자들로부터 65억달러의 세수를 각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향후 10년간 약 6,8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퓨 이코노믹 폴리시 그룹(Pew Economic Policy Group)이 지난 2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2만달러 이하의 개인과 소득 2만 5천달러 이하의 가계에 대한 감세를 지속할 경우 향후 10년간 정부의 부담은 2조 2천만달러에 이릅니다
- 2만 5천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까지 지속할 경우 정부 부담은 3조 3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라.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

[조세동향 10-21]

- 2010년 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 (Small business Jobs of 2010(H.R. 5297))’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9월 27일에 대통령 서명을 받음으로써 법률로 발효되었음
-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H.R. 5297))’은 소기업들에 세금혜택과 용자를 지원함으로써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0억달러의 세금혜택을 기업들에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법률에는 8개의 새로운 세금감면제도, 소규모 은행에 대한 투자를 위한 300억달러의 펀드 조성, SBA대출⁶⁾ 한도액 확대 연장, 주정부 재정안 지원 등에 대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1)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기존 법률에 의하면 적격 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은 자본이득 중 75%에 대해서만 면세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법률로 인하여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적격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모든 자본이득이 전액 면세됨
 - 이번 법률로 인하여 100만개 이상의 소기업들이 모든 자본이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 형태는 일반주식회사(C-Corporation)이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LLC)나 S법인(S-Corporation)⁷⁾은 동 혜택의 대상이 아님
 - 일반주식회사(C-Corporation)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5천만달러 이하의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프로그램

7) 내국세법 Chapter 1의 Subchapter C에 규정된 법인의 형태

2) 소기업의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

- 기업들은 내국세법 § 179상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은 작년의 경기부양책으로 25만달러로 늘어났으나 이번 법률을 통하여 한도액이 50만달러까지로 확장되었음
- 이 항목은 2009년 말에 일몰종료 시점이었으나 2011년까지 유효하도록 일몰 연장됨
- 450만개의 소기업들과 개인들이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내국세법 § 179상 자산의 범위도 확대됨

3) 50%의 보너스 감가상각

- 내국세법 § 168(k)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시킴으로써 200만개의 기업들이 새로운 자산 구입에 대하여 올해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4)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에 대한 공제

- 200만명의 자영업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음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제제도는 연간 19억달러의 조세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5) 핸드폰 공제제도에 대한 단순화

- 소기업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한 비용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였음

6) 창업비용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 증가

- 올해부터 창업비용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가시킴
 - 기존 법률에 따르면 창업비용이 5만달러를 초과할 때 5천달러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창업비용이 6만달러가 넘게 되면 1만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7) 일반사업 세액공제 5년 이월공제

- 기존 법률하에서 내국세법 § 39상 일반사업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이월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해짐
 - 소기업들이 이익을 낸 연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그 후에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액을 직전연도에 낸 세금에 한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과거 5개 연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할 수 있게 됨

8) 세무신고에 대한 가산금 개정

-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⁸⁾ 기존에는 고정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세무신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75%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이 경우,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경우 20만달러, 개인의 경우 1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감세연장법안 승인

[조세동향 11-01]

- 2010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010년 미국 감세연장법안(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을 최종 승인하였음

8) 내국세법 § 6011상 신고해야 할 거래와 신고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 이 법안은 2010년 말로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자본소득세·배당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수준(15%)으로 유지하고, 사회보장세를 1년간 2% 인하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실리 추구 차원에서, 기존에 고수 하던 부유층 감세정책의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공화당과 전 계층에 대한 감세안 연장 등을 포함한 타협안에 합의하였음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중단하고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정책을 공약하였으나,
 - 지난 2010년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후 12월 초에 공화당의 감세조치 2년 연장안을 수용하였음

1) 개인소득세

- 2010년 12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개인소득세율 10%, 15%, 25%, 28%, 33%, 35%가 2012년까지 연장되었고,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가 2012년까지 기존 15%로 현상 유지되었음⁹⁾
-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입양 세액공제(adoption tax credit), 부양가족세액공제(dependent tax credit) 등 근로 가족과 아동에 관련된 조세혜택 일몰 시효가 2012년까지 연장되었음

2) 유산세(Estate Tax), 세대생략 이전과세(General Skipping Transfer Tax), 증여세(Gift Tax)

- 2009년 12월에 만료되었던 유산세(Estate Tax)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활되었음

9) 주요국의 조세동향 [조세동향 10-19] 참조

- 유산세율은 최대 3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500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2009년 12월에 만료되었던 세대생략 이전과세(General Skipping Transfer Tax)¹⁰⁾가 부활되어 2011년과 2012년에 최대 3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임
- 세대생략 이전과세도 500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증여세(Gift tax)는 2011년부터는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500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법인세

- 내국세법 § 168(k)의 50% 보너스 감가상각규정이 2011년에는 100%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2012년부터 보너스 감가상각규정의 한도가 다시 50%로 제한될 예정임
- 내국세법 § 41의 연구세액공제(Research Tax Credit)는 2009년에 일몰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2011년 12월까지 적용됨
- 일자리 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의 일몰기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였음
 - 일자리 기회 세액공제란 장기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임
-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던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소기업의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 규정들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음¹¹⁾

10)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세대 이전과세가 부과됨

11) 주요국의 조세동향 [조세동향 10-21] 참조

4) 기타

- 그 밖에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1년간 2% 인하하였으며,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을 13개월 연장하였고, 각종 에너지 인센티브, 재난구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었음

2. 캐나다

가. 캐나다의 부가가치세 체계 및 최근 동향

[조세동향 10-13]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의 GST(Goods and Service Tax)와 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로 구성됨
 - 연방정부는 5%의 세율로 GST를 부과하고 있음
 - GST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거래도 포함함
 - GST란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GST 순액을 납부하는 방식임
 - 주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율로 PST를 부과하고 있음
 - 주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PST는 주 지역 내에서의 재화(유형자산, 동산)와 용역의 판매 및 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 PST는 재화의 최종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사용되는 사무용품과 기타 장비 등에는 부과하지만 재판매를 위해 구입하는 재고자산에는 부과하지 않음
- 캐나다는 10개의 주정부와 3개의 자치구(territory)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정부 및 자치구의 PST 세율은 <표 I-1>과 같음

- 예외적으로, 앨버타 주와 3개의 자치구에서는 PST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표 1-1〉 주정부의 PST 세율

주/자치구	세율	주/자치구	세율
앨버타	No PST	온타리오	8.0 ¹⁾
브리티시컬롬비아	7.0 ¹⁾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0.0 ³⁾
매니토바	7.0	퀘벡	7.5 ⁴⁾
뉴브런즈윅	8.0 ²⁾	서스캐처원	5.0
뉴펀들랜드앳랜브라도	8.0 ²⁾	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 자치구	No PST
노바스코샤	8.0 ²⁾		

주: 1) 브리티시컬롬비아와 온타리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GST와 PST를 단일화함

2)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앳랜브라도, 노바스코샤는 1997년 4월 1일부터 GST와 PST가 단일화되어 13%의 HST로 부과하고 있음

3) GST 포함 가격에 PST 세율을 적용하므로 유효세율은 10.5%임

4) GST 포함 가격에 PST 세율을 적용하므로 유효세율은 7.875%임

□ 퀘벡은 다른 주정부와 달리 최종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형태가 아니고 거래단계별로 과세하는 형태(이하 'QST'(Quebec Sales Tax)라 함)임

- QST는 연방정부의 GST와 동일한 과세방식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

- 예를 들면, 금융중개서비스의 경우 GST 과세목적상 면세공급에 해당하지만 QST 과세목적상으로는 영세율 공급에 해당함

□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PST를 연방정부의 GST와 결합하여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하나의 간접세인 HST(Harmonized Sales Tax)로 징수하고 해당 주정부에 교부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음

- 단일화된 과세체계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므로 현재는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GST와 PST를 운영하고 있음

- 1997년 4월 1일부터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앳랜브라도의 3개 주정부는 PST와 GST를 단일화하여 HST(Harmonized Sales Tax)라는 하나의 연방 및 주 정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이들 3개 주의 HST 세율은 모두 13%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노바스코샤는 15%로 인상할 예정임

- 캐나다 정부는 2010년 6월 9일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새로운 HST의 성문화를 위하여 'New Harmonized Value-added Tax System Regulation'을 발표하였음
- 2010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주는 13%(8%의 PST와 5%의 GST를 합한 세율),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12%(7%의 PST와 5%의 GST를 합한 세율)의 세율로 HST가 부과될 예정임
- 따라서 총 13개의 주정부 및 자치구 중 HST가 부과되는 지역이 3개 주정부에서 5개로 주정부로 확대됨

나.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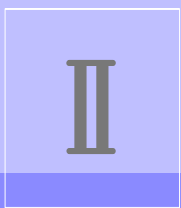
[조세동향 10-24]

- 2010년 11월 5일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기술적인 개정사항과 관련된 입법안을 발표하였음
- 2010년 7월 16일에 재무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었으나, 이번 11월에 추가된 개정사항을 공지하였음
- 지난 7월 16일에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는 세부적인 조세경감(tax relief) 규정, 법인소득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소득세 시행규칙 개정 등이 있었음
- 2010년 11월 5일에 추가 발표된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관한 규정, 연금 관련 규정, 생애자본이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규정 등이 있음

-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관한 규정으로는 전문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에 관한 정의 규정¹²⁾이 신설되었고, 세무상 장부가액에 관한 계산 방법¹³⁾ 등이 개정됨
- 연금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된 연금계획(registered pension plan)에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임
- 자본이득에 대한 규정으로는 생애자본이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와 관련하여 생애자본이득 공제가 인정되는 적격 농장 자산(qualified farm property)의 요건, 적격 어업 자산(qualified fishing property)의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됨
 - 적격 농장 자산(qualified farm property):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자산인 적격 농장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현된 자본이득 중 75만달러까지 비과세됨
 - 적격 어업 자산(qualified fishing property): 어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현된 자본이득 중 75만달러까지 비과세됨
- 그 밖에 개인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세액 공제 관련 각종 정의 규정, 트럭 운전자의 음식물 비용에 대한 공제규정 등이 개정안에 포함됨

12) 개정안에 따르면, 한명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가 영업하는 파트너십을 전문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으로 정의하고 있음

13) 파트너십 지분의 세무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ITA 53(1)(e) 참조



유 럽

II

유 럽

1. 그리스

가. 그리스의 세제개혁 및 경과

[조세동향 10-09]

1) 배경

- 그리스 경제위기의 근원인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12.7% 12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세수감소와 세출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는 크게 다음 3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언급됨
 - 유로존 가입 후 이자가 낮아짐에 따라 외채 증가를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함
 - 유로존 가입 전인 1990년대의 평균 이자율은 10~18%였으나 유로존 가입 후 적용받는 이자율이 2~3%로 크게 낮아짐
 - 이자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재정적자를 개선하기보다는 외채를 통해 보전해 왔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재정적자 문제는 그리스 경제위기를 불러옴
 - 그리스에 만연한 부패와 도덕적 해이¹⁴⁾
 - 그리스 정부는 오랫동안 EU의 부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채를 은폐¹⁵⁾하는 한편, 타 회원국과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방만¹⁶⁾하게 운영하였음
 - 조세회피 및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약 25%(2007년

14)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WSJ을 통해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부패 때문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15) 그리스 위기가 수면에 오르기 3개월 전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책임자 개리콘 등이 그리스를 방문해 의료보험기금의 부채를 훨씬 미래의 시점에 잡히도록 하는 금융설계방안을 제안(NYT, "Wall st. Helped Greece to Mask Debt Fueling Europe's Crisis" 기사 참조)

16)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을 5만명 늘렸고 공공부문 과잉인력에 대한 감독도 부재

기준)에 달하는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중¹⁷⁾임

○ EU 시스템의 불균형¹⁸⁾

- EU의 경우 환율은 유로로 통일되고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결정하는 반면 재정정책은 회원국 단위에서 조절하고 있어서 통일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따라 EU 각국은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도한 재정정책 도구를 이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은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누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음

□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는 대응과정에서 주로 국채발행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제 개혁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에는 EU와 IMF에 적극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임

- 2010년 1월 말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대두
- 2월 2일: EU 집행위원회에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 3월 5일, 24일: 재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급 세제조치 및 전반적인 주요 세 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
- 3월~4월중: 1월 초부터 80억유로, 3월 초 50억유로, 3월 말 50억유로, 4월 초 15억 유로 규모의 국채발행¹⁹⁾
- 2월~3월중: EU 특별정상회의 및 EU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그리스 지원에 원칙적 합의²⁰⁾
- 2~3월중: 세계개혁에 반발하며 공무원노조 및 각종 노동자연맹은 지속적인 총파업 선언²¹⁾

17) 『한국의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상공회의소, 2008년. 이 보고서에서는 1960~1997년 동안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를 35%로 추산하고 있음

18) Financial Times, "The euro will face bigger tests than Greece", George Soros 기고 내용, 2,22일자

19) 그리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약 400억유로의 국채를 더 발행할 계획이며, 여타 회원국에 비해 금리(5.9~6.35)도 매우 높아 여전히 위기로인이 상존하며, 4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82억유로에 대해서는 상환 해소가 가능하나 5월중 87억유로 규모의 만기상환 도래 예정

20) 그러나 회원국간 갈등(프랑스는 우호적, 독일은 반대)과 포르투갈, 스페인 등 2차, 3차의 재정위기 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지원내용이 확정되지 않음

21) 이들은 금융위기의 주범은 단속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금까지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하층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선언

- 4월 초: 지난 4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하고, 그리스의 4개 은행이 신용위기 때 조성한 자금을 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등 위기상황이 계속됨
- 3월 말~4월 중순: 그리스 지원에 대해 EU와 IMF가 공동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다가 4월 15일 EU와 IMF에 구제금융 요청(4월 15일)²²⁾
 - 그리스 재무부 장관은 “EU-IMF와 다년간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논의하자”며 외부지원을 요청하며, 외부의 지원은 “그리스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그러나 EU의 경우 지난 4월 12일 300억유로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갈등 등으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며, IMF 역시 그리스 지원에 미온적 자세를 보여, 또다시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가 재발하는 상황

2) 최근의 세제개혁 내용

- 그리스는 2010년 3월 5일 긴급 세제조치에 이어 3월 24일 전반적인 주요 조세개혁 내용을 담은 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세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 최고소득세율 인상, 세제의 효율화 및 조세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됨
- 2010년 3월 24일 주요 조세개혁 내용을 담은 세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4월 21일 승인됨
-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로는 소비과세를 인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회피나 탈루를 방지하여 확보된 조세수입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지를 보임
- 이번 세제개혁의 여러 가지 조치들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저소득층에게는 감세나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세부담을 확대하고 특혜제도 등은 감독

22) 한국진보연대, 주간경제동향(4. 21) 참조

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주요한 특징임

- 그 외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등의 세원투명화와 세제효율화 조치 등의 변화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 기업과세의 경우는 법인세율을 2014년까지 매년 1%p씩 인하하며, 조세피난처와 특혜제도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감독이 강화되고, 파트너십 세율이 인상됨
 - 기업의 법인²³⁾세율은 2010년에 24%에서 점진적으로 매년 1%p씩 감소하여 2014년 20%까지 인하됨
 - 조세피난처와 특혜제도의 감독 강화
 - 조세피난처와 그리스 일반세율의 50% 이하만을 부과하는 특혜제도(preferential tax regimes)²⁴⁾에 의한 거래의 경우 그 지출이 '실제 고객과의 거래'라는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거래 시 발생한 직·간접적 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 파트너십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25%로 증가됨
 - 특수사업
 - 주유소, 택시사업자, 숙박업 또는 캠핑 종류 등의 특수 형태의 사업은 기존에 간주 소득기준으로 과세되었으나 이후에는 반드시 회계기장이 요구되고, 순이익에 기초하여 과세함
- 개인과세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세율이 8구간으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 및 구간이 인상되고 부양가족공제의 범위도 변경되며, 그 외 금융기관의 보너스나 상여금 등은 특별세율로 과세함
 - 세율과 과표 구간²⁵⁾은 2010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새로운 세율체계는 8개의 구간을 가지며, 세율은 18%에서 45%로 구성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23) 일반법인과 유한책임회사

24) 공공부문 부패의 온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제도

25) 소득세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에 대하여 인상된 소득세 부담의 대부분은 40,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소득세 영수증을 첨부하는 근로자 중 95%는 30,000유로 이하에 분포하여 세부담의 증가는 미미하다고 그리스 총리는 답변함

- 최고세율은 45%로 연간소득 100,000유로를 초과할 때 적용되고, 60,000~ 100,000 유로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75,000유로 구간은 사라짐
- 현행과 같이 소득 12,000유로까지는 세금면제 대상이 되며, 납세자의 생활비영수증 제출이 필요

〈표 II-1〉 그리스의 소득세 과표구간(2010)

근로소득 구간 (유로)	세율 (%)
0 - 12,000	0
12,001 - 16,000	18
16,001 - 22,000	24
22,001 - 26,000	26
26,001 - 32,000	32
32,001 - 40,000	36
40,001 - 60,000	38
60,001- 100,000	40
100,000 초과	45

- 다음과 같이 부양자녀공제가 적용됨

〈표 II-2〉 부양자녀공제가 변경 내용

구 간	변 경	현 행
1명의 부양자녀	1,500유로	1,000유로
2명의 부양자녀	3,000유로	2,000유로
3명의 부양자녀	11,500유로	10,000유로
3명 이후 추가자녀당	각 2,000유로 추가	1,000유로 추가

- 배당금은 과세소득에 추가되어 일반과세²⁶⁾되며, 현행은 10% 단일세율로 과세함
 - 은행예금이나 국공채에 부과하던 이자소득은 현행대로 10% 원천징수함
 - 특별 세율과 구간: 특정한 소득 형태에는 특별 세율을 적용
 - 비거주자가 획득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20%에서 25%로 인상되고 단일세율 과세
 - 'Termination indemnity(퇴직 보상금)'는 특별세 구간(분류과세)으로 과세되며, 최고 세율은 30%임
 - 은행 및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너스(상여금)²⁷⁾는 90%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업무용 차량
 - 17,000유로 이상 업무용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은(업무용의 렌터카 포함)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됨
 - 스톡옵션 계획
 - 옵션 행사일에 옵션가격과 주식가격 차이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0.5%p에서 2%p까지 인상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2011년부터 실시됨
-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4.5%, 9%, 19%에서 5%, 10%, 21%로 세율을 증가시켜서, 그리스 정부는 GDP의 0.54%인 13억유로의 재정수입 충당 효과를 기대함
 - 전문가 그룹(예: 변호사, 민간공증인, 법관 등)에 대한 VAT 면세는 폐지되었고, 병원이나 의료진단(특수진단 포함)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면세됨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3,000유로 이상의 회사 간, 회사- 공공부문 간 거래시 모든 청구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유통되고 발행되도록 조정함
 - 그 외 1,500유로 이상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은행결제시스템(신용카드 이용 등)을 거쳐야 함

26) 개인소득세의 주요 세율과 구간

27) bonus tax의 일종

- 유류, 담배, 주류에 대한 소비과세는 대폭 강화되며, 각각의 세율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그리스는 유류, 담배, 주류, 전자제품 및 사치품(자동차, 요트 등)에 대한 소비세율 증가로 GDP의 0.46%인 11억유로의 재정수입 기대
 - 유류에 대해서는 가솔린은 0.08유로, 디젤은 0.03유로로 소비세 인상
 - 담배는 65%(현행은 63%), 주류는 20%로 소비세 인상
 - 전자제품은 상업용은 2.5유로, 가정용은 5유로의 소비세 부과
 -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

- 그 외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변화 내용이 포함됨
 - 상장주식의 자본이득
 -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단기매매²⁸⁾(3개월 이상~1년 이내)를 통해 획득된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10%로 원천과세됨
 -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15% 원천과세함
 - 2011년 1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
 - 자금의 본국 송환
 - 해외 보유 펀드(예금 포함)를 법개정 이후 6개월 내에서 최소한 1년 이내에 그리스 은행계정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전환된 펀드가치에 대해서 5%의 세율을 적용²⁹⁾함
 -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자금이 해외에 남아 있다면 8%의 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 과세³⁰⁾
 - 기존의 ETAK(부동산세)는 폐지되었고, 소유하고 있는 실질 부동산의 총가치에 대하여 연간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됨
 - 개인: 최대 40만유로까지는 면세되며,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 0.1%³¹⁾에서 2%³²⁾까지 다양한 세율 적용
 - 법인: 0.6%의 단일세율로 적용

28) 3개월 미만의 경우는 20% 원천과세

29) 6개월 이내의 본국송환 자금은 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30) 누진과세 도입

31) 40만~50만유로

32) 500만유로 이상에 대해 적용

〈표 II-3〉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도입

자산가치 (유로)	세율 (%)
400,000까지	0
400,001 ~ 500,000	0.1
500,001 ~ 600,000	0.3
600,001 ~ 700,000	0.6
700,001 ~ 800,000	0.9
800,001 ~ 5,000,000	1
5,000,000 초과	2

- 역외기업에 귀속된 자산의 연간세율은 3%에서 15%로 증가됨.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경우는 어떠한 개인의 양도자산에 대해 감면세율이 적용됨
-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발생 및 범칙금은 최소한으로 감소됨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재산의 가치 2만유로까지는 8%(현행 9%)
 -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현행 11%)

나. 그리스 추가 긴축재정 계획

[조세동향 10-25]

- 정부는 2010년 11월 18일 추가 긴축재정(austerity measure)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함
 -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결손을 2011년 GDP의 7.4%로 대폭 줄여³³⁾ EU/IMF 긴급구제시 약속한 목표치인 7.6%를 초과 달성할 계획임
 - 궁극적으로는 유로존에서 정한 한도인 GDP의 3%를 달성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 인상안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임

33) 2010년 4월 30일 AP 보도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의 재정결손은 GDP의 115%에 육박했음

- 제3차 부가가치세 인상계획에 의하면 식품 및 의약품에 적용되는 11%의 경감세율을 2%p 인상하여 13%를 적용함
 - 단, 23%의 표준세율과 서적 및 신문에 적용되는 5.5%의 최저세율은 유지할 방침임

〈표 II-4〉 그리스의 2010년 부가가치세율 변천

(단위 : %)

구분	~ 2010.03.14	1차 인상: 2010.03.15 ~	2차 인상: 2010.07.01 ~	3차 인상안
표준세율	19	21	23	23
경감세율	9	10	11	13 ¹⁾
최저세율	4.5	5	5.5	5.5

주: 1) 여행부문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11%에서 6.5%로 인하함

- 추가 긴축계획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외에도 의료보험제도 축소, 공익법인 경영비용 축소, 조세회피에 대한 엄중 단속,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강화, 국방비 지출 축소, 명목연금액 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 및 세수확대 정책 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일부 조세지원 정책 역시 계획되어 있음
 - 배당하지 않은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0%로 4%p 인하함
 -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행부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의 경우 현 11%에서 6.5%로 인하함

2.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지분면제제도 적용요건 완화

[조세동향 10-15]

- 네덜란드는 2010년 조세계획(tax plan for 2010)에서 발표된 지분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의 적용에 관한 시행령(decree)을 2010년 7월 12일 발표함
 - 발표된 시행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2010년 조세계획에 따르면, 지분면제제도에 대한 적용요건의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음

- 지분면제제도 : 특정배당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완전히 과세에서 면제되는 제도
 - 네덜란드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의무를 부담함
 - 지분면제제도가 적용될 경우, 특정한 배당·외환차익·주식에 관한 자본이득 등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지분면제제도의 적용요건은 ① 지분율 요건 ② 보유목적 요건임
 - 지분율 요건 : 투자회사는 자회사 자본 중 최소 5%를 소유해야 함
 - 보유목적 요건 : 지분은 사업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하며, 단순히 포트폴리오 투자로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보유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회사 자산의 50% 이하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면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5% 이하의 지분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류됨

- 개정된 투자지분면제제도에 따르면,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판단된 경우라도, ① 과세가능요건(subject-to-tax test) ② 자산요건(asset test)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 지분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전 제도의 경우, 투자지분 자체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류되지만 않으면 적어도 5%까지의 자회사 지분도 지분면제제도가 적용됨
 - 보유한 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목적에 따라 결정됨

- 과세가능요건 : 변경 제도에 따르면,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지분면제제도는 거주 상태에 있는 자회사가 충분한 세율로 이윤세(profit tax)를 부담하는 경우 적용됨
 - 현재, 이윤세는 10%의 세율로 과세됨
 - 만약 이윤세가 충분한 세율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① 과세표준이 매우 작을 경우, 또는 ② 외국회사가 과세상 특혜를 입을 경우에는 지분투자면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자산요건 : 자회사의 자산은 저율과세 투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구성되어서는 아니 됨

나. 네덜란드 톤세 적용 대상선박 확대

[조세동향 10-16]

1) 톤세 적용 선박 확대 배경

- 최근 세계 각국은 톤세와 같은 해운기업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세제를 도입하여 각국의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중임
 - EU 회원국은 EU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톤세는 주로

네덜란드 모델에 기초로 하고 있음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EU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톤세를 도입하였음
- 네덜란드는 그동안 톤세의 적용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EU위원회(EU commission)는 회원국이 해상운송에 개별적인 지원정책을 하는 것을 수년 동안 반대하였음
- 하지만 2009년 1월 13일 EU위원회는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운송과 동일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 설치 활동은 해상운송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정함

2) 개정 경과

- 2010년 조세개혁 패키지(Law 23/2009) 중 톤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 2010년 7월 16일에 승인됨
- 2010년 조세개혁 패키지는 2009년 12월 23일에 입안되었으나, EU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아 조세개혁 패키지의 실행이 미루어졌으며 최근 EU위원회가 이를 승인함
- 톤세 적용대상 선박을 확대하는 조세개혁 패키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톤세 적용대상 선박 확대는 네덜란드 해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3) 개정 톤세 제도

- 톤세 제도에 따르면, 해운회사는 일반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해운회사가 새로운 톤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보유한 선박이 네덜란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② EU나 EEA의 회원국 중 하나에 선적을 두고 있어야 함

- 새로운 톤세 제도는 ① 케이블이나 파이프 설치 선박, ② 연구용 선박, ③ 크레인 선박의 운항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이러한 종류의 선박은 이미 톤세가 적용되는 준설선(dredger), 예인선(tugboat), 및 보조선(assistant vessel)의 운항활동과 동일하게 톤세의 적용대상이 됨

다. 네덜란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안 및 원천징수세율 개편

[조세동향 10-19]

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안

- 2010년 8월 31일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다음의 대책안을 발표함
 - 주택의 리노베이션과 수리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은 6%로, 경감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됨
 - 이 조치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이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개인이 신규주택과 이전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 이 조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주택의 임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주택에 관한 주택담보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 이 조치의 적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2011년에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6%의 자산이전세(property transfer tax)를 부과함
 - 현행 규정은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6%의 자산이전세를 부과함

2) 중동국가 투자유인을 위한 원천징수세율 개편

- 최근 수년간 네덜란드는 중동의 여러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동국가의 네덜란드 투자소득에 대하여 낮은 원천징수세율

을 적용함

- 바레인, 카타르 및 UAE와는 이미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약은 승인이 진행중임
- 바레인과의 조세조약은 2008년 4월 16일에 승인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은 2008년 4월 24일에 승인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UAE와의 조세조약은 2007년 5월 8일에 승인되어, 2010년 6월 2일부터 시행됨

□ 네덜란드는 투자소득에 대한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아 중동국가와 조세조약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이고 이자와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임
- OECD 모델 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25% 지분율을 초과할 경우 5%),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됨

□ 바레인, 카타르 및 UAE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소득(배당금, 이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네덜란드 세법이나 OECD 모델조약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게 규정함

- 바레인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임
- 다만, 법인인 주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0%로 함
-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임
- 다만, 법인인 주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0%로 함

- UAE와의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임
- 다만, 법인인 주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네덜란드의 2011년 세법개정안

[조세동향 10-20]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0년 9월 21일에 2011년 세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함
 -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인세, 소득세, 조세행정에 관한 주요한 2011년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

- 과세소득 중 20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현행 기준(25.5%)보다 0.5%p를 인하함
- 공제가능 결손금이 있는 회사의 인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제정함
 -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취득한 회사가 취득 이전부터 보유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에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하였으며,
 - 회사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결손에 대해서 취득 이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함
- 회계연도가 역년(曆年)과 다른 외국법인의 과세연도를 거주자에 대한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법인세는 회계연도가 아닌 역년을 과세연도로 함
- 기술혁신특례(innovation box)의 적용범위가 확대됨

- 특정자산에 대한 특허권이 신청되는 연도부터 그 특허권이 승인되는 연도 중에 특정자산에서 발생한 편익(benefit)도 기술혁신특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됨
- 기술혁신특례란 자가창설 특허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소득(royalty)에 대해서 5%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함

2) 소득세

- 소득세의 첫 번째 과세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1.85%로 설정하여 현행 기준(2.0%)보다 0.15%를 인하함
-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이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개인이 신규 주택과 이전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 이 조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중소기업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exemption)가 도입됨
 - 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는 발행된 주식에 대한 투자임
 -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어서는 아니 되며, 투자금액은 12개월 동안 150만유로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 기념물(monument)에 대한 조세혜택이 확대됨
 - 기념물이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기념물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

- 주택의 리모델링과 수리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은 6%로, 경감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됨
 - 이 조치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거주하는 국가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에 대하여 부과됨
 - 영업이익은 여행상품 판매가에서 여행업자가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됨
 - 다만, 여행업자가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4) 증여세

- 왕족의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가 제한적으로 실행될 계획임
 - 현행 기준에서는 공직에 있는 왕족의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만이 면제되었음

5) 개별소비세

- 자산이전세(transfer tax)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치의 30%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전세를 부담함
- 차량(motor vehicle)에 대한 사치세(luxury tax)의 단계적 폐지가 연기됨
- 온실에서 자란 농산물의 성장을 위한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네랄오일(mineral oil)을 사용하여도 경감세율이 적용됨
 - 네덜란드의 경감세율은 6%이며, 표준세율은 19%임

마. 네덜란드의 외국 혼성체에 대한 과세요건

[조세동향 10-24]

- 국제조세상, 특정 국가에서 세무상 도관체로 분류되나 다른 국가에서 세무상 비도관체로 분류되는 실체(entity)를 혼성체(Hybrid Entity)라고 함

- 특정 국가의 혼성체에 대한 도관체 분류는 국제세법상 논란이 되어옴
 - 혼성체 분류의 통일성을 위한 OECD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실체(Foreign Entity)에 대한 분류는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결정됨
 - OECD는 OECD partnership report (march 17, 1997, IFZ97/204)에서 도관체 분류상 차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함
 - 따라서 혼성체의 분류에 따라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이나 이중비과세(Double Nontax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외국실체에 대한 도관체 분류는 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관체 분류에 관하여 국제조세상 관례보다는 네덜란드 국내 세법의 규정이 중요함
-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는 외국 혼성체(Foreign Hybrid Entity)의 분류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1일에 외국 혼성체의 분류에 관한 시행령(Decree CPP 2009/519M)을 발표함

1) 일반원칙

- 외국실체의 분류는 '유사성 접근법(Similarity Approach)'에 따라 결정됨
- 유사성 접근법 : 외국 혼성체를 가장 유사한 네덜란드의 실체와 동일하게 분류하는 방법임
 - 즉, 네덜란드 세무상 네덜란드의 실체로 간주할 경우 분류되는 바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 따라서 외국 혼성체도 그 특성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체와 동일하게 분류하게 됨
 - 이러한 특성은 네덜란드 민법, 회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네덜란드 법인세법에 따르면 모든 법적 실체는 법인세를 부담함
-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적 실체에는 모든 법인과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포함됨
 - 또한 네덜란드 법인과 '비슷한(comparable)' 모든 외국법인도 네덜란드의 법인세를 부담함

- 여기서 네덜란드 법인과 ‘비슷한’ 외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09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외국 혼성체의 분류에 관한 시행령(Decree CPP 2009/519M)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2) 외국 혼성체의 범위(Scope)

- 위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혼성체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실체를 포함됨
 - 혼성체에 포함되는 실체로는 법인, 파트너십 등 원칙적으로 모든 실체임
 - 다만, 협회(association), 재단(foundation), 신탁(trusts) 및 이와 유사한 실체의 경우에는 제외됨
 - 또한 위의 혼성체에는 주주나 파트너의 수가 하나인 법인, 파트너십, 및 네덜란드 민법에 의한 경우 금융계약인 파트너십도 제외됨

3) 외국 혼성체의 분류

- 외국 혼성체도 네덜란드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됨
 - 네덜란드 세법에서는 법인을 비도관체, 파트너십을 도관체로 규정하고 있음
 - 즉, 비도관체인 법인은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체인 데 비해, 도관체인 파트너십은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체가 아님
- 외국 혼성체가 법인(비도관체)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다음 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② 주주나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지면서, 실체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운영에 있어 주주나 파트너의 위험부담이 없어야 함

법인 분류 요건	
(A)	영업활동에 투입되는 자산에 대해 실체(entity)가 소유권이 있는가?
(B)	실체의 부채에 대한 주주나 파트너의 의무가 제한되는가?
(C)	법령에 따라 실체의 자본이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D)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주주나 파트너의 동의 없이 다른 주주나 파트너의 지분참여가 가능한가?

□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실체는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분류됨

4) 분류의 효과

□ 비도관체로 분류되는 외국 혼성체는 네덜란드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됨

- 반면에 비도관체로 분류되는 외국 혼성체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네덜란드의 법인세를 부담함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세무상 거주한다'라고 말함

□ 도관체로 분류되는 외국 혼성체의 경우, 그 혼성체의 소득은 파트너에 직접 할당(allocation)되므로 파트너는 그 할당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음

5) 분류를 위한 지원

□ 외국 혼성체 분류는 혼성체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개별 혼성체의 분류는 각각 다를 수 있음

-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전형적인 외국실체에 대한 외국 혼성체 분류 리스트를 발표함
- 다만, 이러한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참고자료이며, 분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요건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3.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의회 세법개정법안 승인

[조세동향 10-11]

- 뉴질랜드 의회는 2010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세법개정법안(Taxation Bill)을 2010년 5월 20일 승인하였음
- 동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GST 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12.5~38%의 세율을 10.5~33%로 인하하며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함
- 개인소득세는 2010-11 과세연도(2010. 4. 1 ~ 2011. 3. 31)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세율 변경시점이 2010년 10월 1일이므로 개정 전·후의 평균 세율이 적용될 것임

〈표 II-5〉 개정 전·후의 소득세율 비교

(단위: NZD, %)

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2010.4.1.~2010.9.30)	2010-11 과세연도 세율	개정 후 세율 (2010.10.1~)
~ 14,000	12.5	11.5	10.5
14,001 ~ 48,000	21.0	19.25	17.5
48,001 ~ 70,000	33.0	31.5	30.0
70,001~	38.0	35.5	33.0

-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가급여세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인하하였음
 - 부가급여세율도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2010-11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후의 평균 세율을 적용함
 - 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됨

〈표 II-6〉 부가급여세율 개정 전·후 비교

(단위: NZD, %)

개정 전		2010-11 과세연도		2011-12년 이후 과세연도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0~12,250	14.29	0~12,390	12.99	0~12,530	11.71
12,251~39,110	26.58	12,391~39,845	23.84	12,531~40,580	21.21
39,111~53,850	49.25	39,846~54,915	45.99	40,581~55,980	42.86
53,851~	61.29	54,915~	55.04	55,981~	49.25

2) 법인세

- 법인세의 적용세율은 현행 30%인 세율을 28%로 인하하고 2011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2011-12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단위신탁(unit trusts), 생명보험 및 기타 저축상품에 대한 적용세율도 현행 30%에서 28%로 인하함
 - 포트폴리오투자기구(Portfolio Investment Entities)에 대한 세율도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현행 30% 세율에서 28%로 인하하되 적용시점은 2010년 10월 1일부터임
- 본 세법개정안은 보다 중립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세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상 적용하는 새로운 감가상각률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내용연수가 50년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세제상 감가상각이 허용되고 있지만 1993~2009년 기간 동안의 건물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2%의 상각률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내용연수가 5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목적상 연간 0%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함
- 이는 내용연수 5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물의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할 계획임
- 내용연수 50년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감가상각함
- 신규로 구입하는 기계장치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0%의 가속상각은 2010년 5월 20일 이후 취득분부터 폐지함

3) GST(Goods and Service Tax)

- 소득세에서 소비세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12.5%인 GST 세율을 15%로 인상하고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GST 세율은 1989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 뉴질랜드는 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소비세로의 전환은 저축과 경제성장 부양을 위한 것임

4) 가족수당(WFF: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 가족수당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기준 금액의 물가연동방식을 폐지함
- 현재 가족수당 금액과 소득기준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누적증가율이 5%이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형태이며 가장 최근의 조정은 2008년 10월에 있었음
- 개정세법에서는 가족수당 금액은 현재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을 하되 수당금액이 경감되는 소득기준 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

4. 덴마크

가. 덴마크 소득세법 개정

[조세동향 10-15]

- 덴마크 의회는 2010년 6월 16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법안(Bill L221)을 제정함

1) Bill L221의 주요 내용

- 일반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세법에서 연단위로 자동 조정해 온 각종 인적공제 및 소득세 과세구간 등을 2011년과 2013년 사이 동결함
 -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경우 최저금액의 인상(DKK 389,900→DKK 409,100)을 연기하여 2011년이 아닌 2014년부터 적용함
- 2011년 자녀수당(child allowance)에 한도금액을 도입하고 자녀수당 금액을 2013년까지 5%만큼 점진적으로 인하함
 - 현재 덴마크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과세 자녀수당을 수취하고 있음
 - 총자녀수당 금액은 자녀의 수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됨

〈표 II-7〉 덴마크의 자녀수당

연령	연간 자녀수당(자녀당 적용) ¹⁾
~ 2세	DKK 16,428
3 ~ 6세	DKK 13,004
7 ~ 17세	DKK 10,232

주: 1) 2009년 기준 금액

- 2011년부터 자녀수당에 한도금액을 도입하여 연간 자녀 수당 수령액을 자녀 수에 관계없이 DKK 35,000으로 제한함
- 또한 자녀수당 금액은 2013년까지 5%만큼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5. 독일

가. 독일 긴축패키지 내각 승인

[조세동향 10-13]

- 독일 내각(cabinet)은 2010년 6월 7일 재정지출 삭감을 비롯하여 세제분야에서 원자력발전소 및 비행기 여객에 대한 과세 신설, 에너지세 특혜조치 폐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승인함
- 메르켈 총리는 동 긴축패키지를 곧 하원(Bundestag)에 제출할 예정임

1)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 메르켈 총리에 의하면, 독일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로 긴축패키지를 도입하였음
 -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현재 GDP의 5% 수준으로 EU 성장 및 안정 협정(EU Growth and Stability Pact)에서는 이를 2013년까지 3% 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최근 2016년까지 연방재정균형을 요청하는 헌법개정안에 승인한 바 있음
- 동 긴축패키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4년 동안 약 85억유로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는 2011년 11.1억유로, 2012년 16.1억유로, 2013년 25.7억유로, 2014년 32.4억유로로 추산됨

2) 주요 내용

- 긴축패키지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대부분 실업수당, 자녀보조금 등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지출 축소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10,000여 개의 연방정부 일자리를 비롯하여 국방비를 축소함에 따라 재정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세제 분야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나 에너지세 및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한 출발세 등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킬 예정임
- 에너지세의 경우 특혜조치를 폐지하고 시설의 가용시간을 연장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추가 과세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연간 약 2.3억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해서는 환경세(environmental tax) 중 하나인 출발세(departure tax)를 부과할 계획임
 - 출발세는 독일 공항을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 부과하며, 그 세율은 비행기의 소음 수준 및 연료소비량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유로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단, 비행기 부문이 2010년 EU 배출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 출발세는 폐지될 것임
- 컴퓨터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신설함
 - 동 거래세의 경우 은행세와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연간 2억 유로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참고로, 은행세의 경우 미래 구제금융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의 규모 및 체계적 위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나. 독일 하원, 은행세 도입안 등 승인

[조세동향 10-25]

- 하원(Bundestag)은 2010년 10월 28일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은행세의 도입, 재정 회복을 위한 비행기 여행세 도입 및 담뱃세 인상 법안에 승인함
 - 법안의 체결을 위해서는 아직 상원(Bundesrat)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임

1) 은행세(Bank tax) 도입안

-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구제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은행세를 도입함
 - 은행세의 적용 대상은 민간은행, 국영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건축조합(building society)임
 - 은행세는 은행의 규모, 체계적 위험,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중앙은행(Bundesbank)과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임
 - 은행세 법안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구조조정기금(fund)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국(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Agency)에서 관리할 방침임
 - 은행세 세수는 연간 10억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금융위기에 금융기관의 구제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임
 - 참고로, 최근 금융위기 동안 정부는 일반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인 4억 8천만유로의 세금을 금융기관 안정화 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음

2) 재정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 하원은 2010년 10월 28일 은행세의 도입과는 별도로 연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이를 약 200억유로까지 추가 확보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는 비행기 여객세(air travel tax)의 도입임
 - 비행기 여객세는 독일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에 대해 부과됨
 - 화물 및 경유(transit) 항공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음
 - 세액으로는 비행기간에 따라 8, 25, 45유로가 부과됨
 - 비행기 여객세의 도입으로 연간 10억유로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됨
 - 단, 항공부문이 2012년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cheme) 대상항목에 포함될 경우 비행기 여객세는 폐지될 방침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임
 - 흡연자의 감소, 저가 및 밀수 담배의 선호로 줄어든 담뱃세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 담뱃세의 인상은 흡연가의 저가 담배 구입 추세를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방침임

6.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10-17]

- 재무장관 Frieden은 2010년 7월 27일 국가의 경제, 재정 및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 기업과세

- 요건을 갖춘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500유로의 최저단일소득세(minimum flat income tax)를 도입함

- 이는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기업의 금융자산, 양도성 증권, 은행예금, 당좌예금, 수표 및 현금 보유액 합계는 대차대조표 총액의 90%를 초과하여야 함
-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olidarity tax)³⁴⁾를 현 4%에서 5%로 인상함
- 21%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나 부가세의 인상으로 총법인세 부담률은 21.84%에서 22.05%로 인상될 것임
 - 한편, 과세소득이 15,000유로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10,00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율을 현 12%에서 13%로 1%p 인상함
- 이는 건물, 가축, 광물, 선박 등을 제외한 특정 감가상각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적용됨

2) 개인과세

-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olidarity tax)를 1.5%p, 3.5%p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함
-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현 2.5%에서 4%로 인상함
 - 소득이 15만유로(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함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 38%에서 39%로 인상함
 - 이는 41,793유로(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83,586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됨

34) 이는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와 같이 실업기금에 대한 분담금(unemployment fund contribution)으로 사용됨

- 개인소득에 대한 추가징수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일부 조정함
 - 개인이 수취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2011년 및 2012년 동안 한시적으로 0.8%의 세액(temporary tax)을 징수함
 - 단, 최저임금(social minimum wage) 이하인 급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여행경비에 대한 연간 공제액을 99유로/km에서 51유로/km로 인하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이혼수당에 대한 최대 공제액을 현 23,400유로에서 24,000유로로 인상함

7. 스위스

가. 스위스 부가가치세 간소화 추진

[조세동향 10-15]

-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10년 6월 24일 단일세율 도입 및 면세대상 축소를 통해 부가가치세제를 간소화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를 통해 사업가의 부가가치세 행정업무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도입

-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에서 경감세율을 폐지하고 6.2%의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함
 - 현재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7.6%의 표준세율과 3.6% 및 2.4%의 경감세율로 구성되어 있음
 - 3.6%의 경감세율은 호텔객실, 별장, 캠핑장 등의 대여에 적용됨
 - 2.4%의 경감세율은 식음료, 가금류, 어류, 종묘, 식물, 곡식, 사료, 의약품,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 서비스 등에 적용됨
 - 스위스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2011년부터 2017년

- 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음
- 표준세율은 7.6%에서 8%로 0.4%p 인상함
- 경감세율의 경우 3.6% 및 2.4%에서 각각 3.8% 및 2.5%로 인상함
- 연방의회의 부가가치세 간소화 계획에 의하면, 2018년부터 경감세율을 폐지하고 6.2%의 단일세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그 결과 표준세율 적용 항목의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고 경감세율 적용 항목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면세대상 축소

- 부가가치세에서 현재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29개 항목 중 21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나. 스위스 추계 과세제도 개정

[조세동향 10-19]

-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10년 9월 8일 추계 과세제도(lump-sum taxation regime)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1) 현행 추계 과세제도

- 추계과세라 함은 스위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임
- 이는 연방소득세 및 주(cantons)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됨
- 단, 취리히 주의 경우 추계과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적용대상자는 국적 및 거주자 요건,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으로 과거 10년간 스위스의 거주자가 아니었을 것
-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이 없을 것

- 추계과세에 의하면 과세표준(lump-sum tax base)은 전 세계소득이 아닌 연간 전 세계 생활비(living expenses)에 기초하여 계산함
 - 최소 생활비는 소유재산 및 지출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이에 특정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고 있음
 - 개인 소유재산의 임대가치의 5배에서 7배
 - 스위스의 임대주(landlord)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의 5배에서 7배
 - 하숙비(board and lodging)의 2배
 - 스위스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
 - 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로 단, 채무자가 스위스의 거주자인 개인이거나 법인일 것
 -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
- 추계 과세제도는 본래 개인의 국외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해야 하는 과세행정 업무를 줄이고 은퇴한 개인이 황혼기를 스위스에서 보내도록 유인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그러나 조세회피에 남용되어 스위스가 조세피난처(tax haven)가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개인 재산가들이 추계과세에 따른 세제혜택을 노리고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음
 - 추계과세에 따른 납부세액은 일반 소득과세에 따른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훨씬 낮으며, 현재 약 4,500명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

2) 연방 의회의 개정법안

- 연방 의회에서는 2010년 9월 8일 추계 과세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추계 과세표준 계산 시 일부 소득요소의 배수를 상향조정하고 최소 과세표준액을 도입한다는 것임
 - 연방 및 주 과세목적상 일부 소득요소의 배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개인 소유재산의 임대가치의 7배

- 스위스의 임대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의 7배
- 하숙비의 3배
- 연방 과세목적상 최소 과세표준액(minimum tax base)을 CHF 400,000으로 하며,
주 과세목적상 최소 과세표준액은 해당 주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함

8. 스웨덴

가. 스웨덴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조세동향 10-11]

- 스웨덴 의회는 2010년 5월 20일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인하하는 법안에 승인함
- 동 법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후 수취하는 소득부터 적용됨

1)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

-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 및 파트너십의 파트너로서 해당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을 수취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함
- 단, 다음의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6세 이상이고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 과세 사업소득은 SEK 40,000을 초과해야 함

2) 인하 금액

- 연간 SEK 10,000을 한도로 사회보장기여금 총액 중 5%를 인하함

-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은 2010년 기준 29.71%로, 그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 사회보장기여금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므로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 구성요소 중 퇴직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SEK 383,25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음

〈표 II-8〉 스웨덴의 사회보장기여금

구분		세율(%) ¹⁾
(1)	퇴직연금보험(sjukförsäkringsavgift)	10.21
(2)	건강보험(sjukförsäkringsavgift)	6.78
(3)	실업보험(arbetsmarknadsavgift)	2.11
(4)	생존자 연금보험(efterlevandepensionsavgift)	1.70
(5)	부모보험(föräldraförsäkringsavgift)	2.20
(6)	산재보험(arbetsskadeavgift)	0.68
(7)	일반급여보험(allmän löneavgift)	6.03
합계		29.71

주: 1) 자영업자(self-employed)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9. 스페인

가. 스페인의 주요 세제개혁 내용

[조세동향 10-09]

1) 배경

- 스페인은 2010년 초 재정적자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재가 존재하여 지난 3월 초와 4월 초에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세제개혁을 추진함

-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 인상보다는 세제 전반의 조정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소비세와 관련하여 면세물품에 대한 적절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였고, 일관된 소비세가 적용이 되도록 세제합리화를 추진함
 - 부가가치세는 e-book의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시 경감세율을 적용해주는 등의 세원 투명성 조치를 추진
- 법인세 분야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일시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반면 조세특례제도에 의한 거래는 감독을 대폭 강화함
- 소득세 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을 위한 수도, 가스의 개보수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줌
- 재정위기 이후 스페인 정부의 대응과정은 다음과 같음
 - 2월중: 재정적자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됨
 - 2~3월중: 국채발행계획³⁵⁾ 및 올해 5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을 계획
 - 3월 초: 2009년 9월 승인된 예산안에 추가적인 세제효율화 조치를 포함하여 승인
 - 4월 9일,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조치를 법령을 통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승인함

2) 스페인의 주요 세제개혁 내용

- 법인세 분야의 경우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혜택이 부여됨
 -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자산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일시상각(free depreciation³⁶⁾)이 각각 2011년과 2012년까지 연장됨
 - 중소기업³⁷⁾에 대한 이전가격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의 제출이 면제
 - 거래가격 10만유로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이 면제되고, 조세회피지역에서의

35) 스페인은 만기채 상환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10년 내 970억유로를 차입해야 하는 상황

36) free depreciation은 감가상각의 형태(일시, 또는 부분상각)를 적절한 투자를 한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37) 연간 매출액 8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거래는 면제에서 제외됨

- 개인소득세 분야는 주거 목적의 주택개조시 에너지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제가 연장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공제제도가 도입됨
 - 주거 목적의 주택개조에 대한 10% 임시소득공제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과세소득 53,007.02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
 - 주택개조는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전기·물·가스의 개보수 등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제의 한도는 총 12,000유로임
 - 대중교통수단 이용공제: 통근자에게 최고 1,500유로의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 분야는 이미 지난해 세율이 인상되었으나 e-book 사용 등에 대해서 기존세율을 적용하거나 최저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과세혜택을 부여함
 - 경감세율이 7%에서 8%(표준세율은 16%에서 18%)로 인상³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주택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7%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함
 - e-book 사용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 ‘e-book을 하드웨어에 다운로드³⁹⁾’ 하는 경우는 최저경감세율 4%를 적용함
 - 그 외 e-book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다음의 행위시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세율(18%)도 16%의 현행 수준으로 과세
 - e-book download 코드 부착 판매
 - 공공기관, 학교 등 디지털화된 e-book 서비스 접속
 - DB 접속이나 상담서비스
 - 문학작품의 디지털화

38) 효력은 2010년 7월 1일부터 발생됨

39) USB나 CD-Rom에 받는 것은 적용 불가하다는 법원 판정

나.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 조세조치

[조세동향 10-12]

1) 5월 12일 긴축패키지

-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10년 5월 12일 15억유로 규모의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발표함
 - 이는 공공부문 급여의 인하 및 동결, 출생 및 입양 지원 폐지, 공공투자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공부문 급여의 경우 2010년 5% 인하하고 2011년에는 동결함
 - 장관 급여는 2010년 15% 대폭 인하함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출생 및 입양 지원 조치를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개인소득세에서 과세기간 중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2,500유로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 단, 2010년 발생한 출생 및 입양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1일 이전 등록을 요건으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출생 및 입양 자녀당 지급하는 2,500유로의 보조금을 폐지함
 - 단, 2010년 발생한 출생 및 입양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1일 이전 등록을 요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음

2) 부유세(Wealth Tax) 도입

- Zapatero 대통령은 2010년 5월 12일의 긴축패키지에 이어 2010년 5월 26일 부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부유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최종 도입안은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임

-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시 기본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 부유세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일반 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납세자는 스페인 인구의 0.1% 미만이어야 함
- 참고로, 스페인에서 부유세는 2008년 경기부양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의 일환으로 폐지된 바 있음
 - 당시 부유세는 순부가 60만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0.2%부터 최대 2.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었으며, 연간 세수는 약 2억유로에 달했음

다. 스페인 모범조세관행규칙 제정

[조세동향 10-16]

- 7개 주요 대기업으로 구성된 조세포럼(Tax Forum of Big Companies)은 2010년 7월 20일 조세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모범조세관행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에 승인함
 - 이는 투명성 및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1) 대기업 조세포럼(Tax Forum of Big Companies)의 설립 및 활동

- 대기업 조세포럼은 지난 2009년 7월 10일 국세청(National Tax Agency)과 27개 대기업의 참여로 설립되었음
 - 조세포럼의 주요 설립목적은 조세위험을 관리하고 조세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확대하는 데 있음
 - 조세포럼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할 계획임
- 조세포럼의 회원인 기업은 법인세 규모, 조세정보 및 인력규모 등에 기초하여 선발되었으며, 향후 추가 회원기업이 선발되는 것도 가능함

- 조세포럼에의 참여가 조세특례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조세포럼 내에서 채택된 협약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을 예정임
- 조세포럼의 주요 활동내용은 납세의무의 실행 및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일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해석기준 논의,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 등으로 구성될 것임
- 구체적으로 조세포럼은 ① 모범조세관행규칙의 작성, ② 간접적 조세부담의 효율화 분석, ③ 이전가격 처리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무진을 구성할 계획임

2) 모범조세관행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대기업 조세포럼(Tax Forum of Big Companies)은 2010년 7월 20일 ‘모범조세관행 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을 승인함
- 동 규칙에 가담한 기업은 조세관행의 개선을 위해 기업 내부적인 체제 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국가재정 및 과세행정에 기여하여야 함
- 회원기업의 구체적인 의무는 ①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 ②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③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협력, ④탈세가 적발되는 경우 과세관청(Tax Administration)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과세관청은 세법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처리기준을 발표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의무는 ① 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제공, ② 일반 적용기준(criteria of general application)의 발행, ③ 특정 복잡거래에 대한 세무상 처리기준의 확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세관청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관련 세무소송 또한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라. 스페인 정부 2011 예산안 확정

[조세동향 10-21]

- 정부는 2010년 9월 24일 2011 예산안(Budget for 2011)을 확정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1 예산안은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최고세율 인상,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의 증세 정책과 아울러 법인세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공제혜택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함
 - 개인소득세 세율에서 현 43% 구간 외에 44% 및 45% 구간을 추가함

〈표 II-9〉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세율

과세소득(유로)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 17,707.20	24	
17,707.20 ~ 33,007.20	28	
33,007.20 ~ 53,407.20	37	
53,407.20 ~ 120,000	43	43
120,000 ~ 175,000		44
175,000 ~		45

-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정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 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300,000유로로 제한함

- 주된 거주지의 취득 및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세소득이 24,170,20유로 미만인 납세자로 제한함
- 이는 거주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에도 적용될 예정임

2) 법인세 분야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800만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은 요건 충족 시 자유 상각 및 가속상각 허용, 과세소득 중 첫 120,202.41유로에 대해 25%의 세율(일반 법인세율 30%) 적용,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 10%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법인에 대해 향후 3년간은 관련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간접세 분야

-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세(capital duty)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 내국법인의 자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본세가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2011년 및 2012년 동안 자본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함

10. 아이슬란드

가. 아이슬란드 법인 및 개인 지원 세법개정

[조세동향 10-18]

- 의회는 2010년 6월 15일, 16일 및 24일 세 차례에 걸쳐 법인 및 개인 지원을 목적으로 직접투자, 주된 거주지의 수리,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한시적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1)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의회는 2010년 6월 15일 아이슬란드 내에서의 직접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한시적인 과세특례 법안을 승인함
 - 아이슬란드에 직접 투자하는 법인은 산업, 에너지 및 관광부(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Tourism)를 통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단일소득세율 적용, 산업수수료(industrial charges) 면제,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인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법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임

2) 주된 거주지의 수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의회는 2010년 6월 16일 주된 거주지(primary residence)의 수리비용 등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함
 - 납세자는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중 발생한 주된 거주지의 건설, 개량 및 수리비용에 대해 그 50%를 국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총공제액은 연간 ISK 20만(부부합산 신고시 ISK 30만)을 한도로 함

3)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일부 과세면제

- 의회는 2010년 6월 24일 채무면제이익(income arising from forgiveness of debt)에 대해 일부 과세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함
 - 개정 전 채무면제이익은 일반적으로 채무자(debtor)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었음

가) 법인의 경우

- 2009~2011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업과정(general business operations)에서 발생한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 중 일부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채무면제이익 중 ISK 5천만까지는 해당 면제이익의 50%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이익의 75%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또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까지 감가(감모)상각대상 자산을 조기 상각하는 혜택을 부여함
 - 감가(감모)상각대상 자산이 없는 기업은 과세되는 부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함

나) 개인의 경우

- 자동차 대출금(car loans)을 2009~2011 과세연도 사이에 면제받는 경우 해당 면제이익은 그 규모에 따라 일부 과세면제가 가능함

〈표 II-10〉 아이슬란드의 채무면제액의 과세면제비율 :개인

채무면제액(ISK) ¹⁾	과세면제비율(%)
~ 15,000,000	100
15,000,000 ~ 30,000,000	50
30,000,000 ~	25

주: 1) 부부합산 신고시 두 배를 적용함

- 또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되는 부분은 2년 동안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5년에 걸쳐 분할 인식하는 것도 가능함

나. 아이슬란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0-21]

- 정부는 2010년 10월 1일 2011 예산안(Budget Bill for 2011)을 의회에 제출함
 - 2011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과 아울러 재정지출 감소정책⁴⁰⁾이 계획되어 있음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인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비롯하여 환경 및 천연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과세를 도입함
 - 법인세 세율을 현 18%에서 20%로 2%p 인상함
 -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특별과세(special tax)를 도입함
 - 탄소제품(carbon products)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및 천연자원세(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tax)를 인상함
-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본이득세 및 상속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제도를 개편함
 -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 18%에서 20%로 2%p 인상함
 - 상속세 세율을 현 5%에서 10%로 5%p 인상함
 - 부유세 과세제도(net wealth taxation regime)를 개정함
 - 개정 관련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은 2010년 7월 IMF가 발행한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40) 재정지출을 2010년과 비교하여 약 ISK 280억만큼 삭감할 계획에 있음

- 아이슬란드의 재정붕괴 이후 아이슬란드에 금융지원을 해 온 IMF에서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세수를 GDP의 2%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저세율 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음
- 2011 예산안에서는 ISK 80억 규모의 신규 세수확보를 계획하며 IMF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외에 부유세, 상속세, 탄소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은 인상하지 않을 계획임

11.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부가가치세율 인상계획

[조세동향 10-22]

- 아일랜드에서는 급증하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당초 검토했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은 1,500억유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자 집단에게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힘
- 12.5%의 법인세율은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15년간 국가 산업정책의 초석(cornerstone)이 되어 왔음
-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신장하여 Dell, Intel, Pfizer 등과 같은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일랜드 내에 그 기반을 두는 데 기여하였음
-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 사실 아일랜드는 2009년 부가가치세율을 0.5%p 인상한 바 있으나 주변국가인 영국과의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2010년 이를 다시 낮추었음

-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관련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해 왔음
 - 아일랜드 역시 금융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2008년 10월 부가가치세율을 0.5%p(21% → 21.5%) 인상하여 2009년 1월부터 적용한 바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북아일랜드(17.5%⁴¹⁾)로 국경을 넘어가자 정부는 2010년 1월 이를 다시 21%로 인하하였음
- 최근 영국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의결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정책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음
- 영국의 보수당-자민당 연정(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은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17.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의결함
 - 정부는 이웃 나라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힘을 얻어 부가가치세율을 2%p 정도 인상(21%→23%)할 계획에 있음

12. 영국

가. 영국 새 정부의 조세계획(Tax Plans)

[조세동향 10-12]

- 2010년 6월 22일로 예정된 긴급예산(Urgent Budget)의 발표를 앞두고 보수당-자민당 연정(Tory-Liberal Democrat coalition)은 지난 2010년 5월 20일 은행세 도입 및 법인세제 간소화 등 세법개정 관련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함
- 보수성향의 보수당과 진보성향의 자민당은 합의문서⁴²⁾를 통해 그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음

41)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7.5%로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42) 'The Coalition: Our Program for Government'

-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긴급예산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156억파운드 규모⁴³⁾의 재정결손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증세정책을 추진하되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인하한다는 것임
- 이하는 연립정부가 세법개정 관련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긴급예산에 앞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세법개정 사항을 정리한 것임

1) 법인세 분야

- 연립정부는 긴급예산을 통해 대대적인 개정방향(big reform)을 담은 5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 법인세 분야의 주요 내용은 국제환경에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는 것임
 - 현행 법인세율은 28%로 새 정부는 보수당의 당초 선거공약에 따라 3%p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 관련 재원은 법인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축소함으로써 확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제의 간소화 역시 기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의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조기 상각되는 측면이 있어 그 공제율을 현 20%에서 12.5%로 인하할 계획임
 - 단, 각종 공제 등을 축소할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제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음
- 또한 연립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할 계획임
 - Cameron 총리는 선거공약을 통해 은행세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안 등은 아직 발표된 바 없음

43) 이는 영국 GDP의 11% 정도 규모임

2) 개인소득세 분야

- 연립정부는 개인소득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
 - 현행 기본인적공제 금액은 6,475파운드임
 - 2011년 4월부터 저소득층 및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이를 인상하여 장기적으로는 1만파운드까지 인상함

-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관련 재원은 비사업자의 자본이득세율 인상 및 국민보험료 과세최저한 인상계획의 취소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 비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 18%에서 40% 또는 50% 정도까지 인상함⁴⁴⁾
 -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18%의 자본이득세율을 유지함
 -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와 관련하여 당초 보수당의 선거공약에 의하면 그 과세최저한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보험료 중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계획을 포기함
 - 따라서 고용주 부담분에 한해 과세최저한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

- 또한 Cameron 총리는 영국의 일간지⁴⁵⁾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여건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인하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힘
 - 특히, 50%의 최고세율 구간과 관련하여 그 세수효과가 크지 않다면 이를 폐지할 수 있음을 언급함
 - 50%의 세율은 브라운 총리 시절 2009년 예산을 통해 도입되어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는 도입 초기부터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등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있어 왔음

44) 보수당·자민당 연정의 영향력 있는 입법가는 정부의 비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그 이유는 비사업자에 대해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경기회복에 해가 된다는 판단에서임. 오히려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부담 경감혜택을 주는 'taper relief'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5) The Daily Telegraph

3) 부가가치세 분야

- 재무부 자문 경제학자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립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재무부 자문 경제학자 28명 중 24명은 201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율이 현 17.5%에서 20%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로써 약 11.5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가계 지출에 약 425파운드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4) 기타 분야

- 기타 분야에서 역시 여러 합의사항이 도출되었고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음
 - 연립정부는 비행기 여객산업의 과세체계 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승객세(per-passenger levy)를 폐지하고 이를 비행기세(per-plane charge)로 대체함
 - 환경과세(environmental taxation) 분야의 세수를 확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처리를 재검토할 계획임

나. 영국 긴급예산 의회제출

[조세동향 10-14]

- 재무장관 오스본은 2010년 6월 22일 긴급예산(Emergency Budget)을 발표함
 - 긴급예산에는 국가의 구조적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연간 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 및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세제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은행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 정책과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제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1) 법인세 분야

□ 법인세제를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28%의 법인세율을 2011년 4월부터 4년 동안 매해 1%p씩 인하하여 2014년 4월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2011년 4월부터 현 21%에서 20%로 1%p 인하함
-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주요 서부 경제권 중 가장 낮은 세율 국가이자 G-20 국가 중 낮은 세율에 속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II-11〉 영국의 법인세율

과세소득	세율(%)	
	변경 전	변경 후(2011.4~)
~ 300,000파운드	21	20
300,001 ~ 1,500,000파운드	한계세율 ¹⁾	한계세율 ¹⁾
1,500,001파운드 ~	28	27

주: 1) 한계세율(marginal rate) 구간에서는 27%(현행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후 한계공제(marginal relief)를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이 때 한계공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함.

$$\text{한계공제(marginal relief)} = \frac{7}{400} \times (M - P) \times \frac{I}{P}$$

* M: 1,500,000파운드

* P: 법인세 과세소득 + 간주투자소득

* I: 법인세 과세소득

- 영국의 일부 지역에 창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를 경감함
- 창업 후 3년 동안 고용주는 고용 후 첫 12개월 동안 발생한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 중 첫 5,000파운드를 면제받음

□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의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공제율 및 공제금액을 인하 조정함

- 2012년 4월 1일부터 자본공제율을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18%로, 장기 내용연수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8%로 인하 조정함⁴⁶⁾
 - 2012년 4월부터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한도금액을 10만파운드에서 2만 5천파운드로 인하함
 - 100%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 대상 자산에 신규 무탄소차량(zero-emissions goods vehicle)을 추가함
-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을 대상으로 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s)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함
- 은행세의 도입 목적은 은행 등이 저위험성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임
 - 이는 미래 실패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미래 경제위기에 대비한 자금이 아닌 경제위기를 반영한 부담금에 해당함
 - 은행세의 적용대상은 은행, 건축조합(building society) 및 국외은행의 영국지점으로 단, 총부채가 20억파운드 미만인 은행 등의 경우 은행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세율로는 당초 0.04%를 계획했으나 0.07%로 인상하여 적용할 계획임
 - 정부는 올 여름 금융부문과 상의하여 하반기에는 은행세에 대한 최종 상세안을 발행할 예정임

2) 개인소득세 분야

- 증세정책으로 2010년 6월 23일부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세(CGT) 세율을 인상하되, 기업가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할 방침임
- 현행 자본이득세율로는 1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긴급 예산안에서는 개인소득세에서 고율세율(40%) 및 추가세율(50%)⁴⁷⁾ 구간을 적

46) 개인의 경우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함

47) 현재 영국에서 개인소득세는 기본세율, 고율세율, 최고세율 등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누진 과세되고 있음

- 용받는 고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10%p 인상(18%→28%)할 계획임
- 단, 기본세율(basic rate) 구간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
- 한편,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업가공제(entrepreneurs' relief) 적용 대상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와 아울러 기업가공제 금액 역시 300만파운드만큼 인상할 계획임
- 요건을 갖춘 생애 첫 자본이득 중 200만파운드를 공제하던 것을 500만파운드를 공제하는 것으로 인상 조정함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금액 인상, 자녀공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임
- 65세 이하인 개인을 대상으로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금액을 2011년 4월 6일부터 현행 6,475파운드에서 7,475파운드로 1,000파운드만큼 인상 조정함
 - 한편, 고율세율(higher rate) 구간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인적공제 금액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기본세율(basic rate) 구간 한도금액은 인하할 계획임
 - 구체적인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RPI)가 확정되는 9월에 정해질 예정임
 - 개인저축계좌(ISA) 한도금액을 2011년 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RPI)에 연동하여 인상 조정함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자녀요소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RPI) 변동에 추가하여 150파운드만큼 인상 조정함
 - 또한 2012년 4월부터는 자녀요소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RPI) 변동에 추가하여 60파운드만큼 인상 조정할 계획임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배당소득	기타소득
기본세율(basic rate)	~ 37,400	10	20 ¹⁾
고율세율(higher rate)	37,400 ~ 150,000	32.5	40
추가세율(additional rate)	150,000 ~	42.5	50

주: 1) 저축소득 중 첫 2,440파운드에 대해서는 10%의 세율(starting rate)을 적용함. 단, 납세자의 비저축소득(non-savings income)이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보험료율(Insurance Premium Tax Rate) 역시 2011년 1월 4일부터 인상하되,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높게 적용함
- 표준요율(standard rate)의 경우 현 5%에서 6%로 1%p 인상하되, 고율요율(higher rate)은 인상폭을 높여 현 17.5%에서 20%로 2.5%p 인상함

3) 부가가치세 분야

-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7.5%에서 20%로 인상 조정함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으로 연간 13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한편, 경감세율(reduced rate)의 경우 현행 5%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

다. 영국 조세간소화국 설립

[조세동향 10-16]

- 재무장관은 2010년 7월 20일 조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을 설립함

1) 설립목적

- 조세간소화국은 과도하게 복잡한 영국의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영국의 현행 세법규정은 11,0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재무장관 Osborne은 조세간소화국과 런던에서의 오찬을 통해 보다 간소하고 경쟁력 있는 세법을 만들 계획임을 밝힘
 - 재무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영국의 세법 조항이 양적인 측면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비판하며, 동 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순위에서는 7위에서 13위로 밀려났음을 지적함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법의 간소화는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법을 간소화할 계획임을 밝힘
- 재무부 비서관 Gauke 역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세법조항을 비롯하여 공공정책에 비추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규정에 초점을 두어 조세간소화국이 세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조세간소화국은 재무부에 배치되며 민간고용인, 민간부문의 경력자로 구성될 것임

2) 주요 업무

- 조세간소화국의 의무는 기업 및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조항 중 간소화가 가능한 분야를 발견하여 이를 재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임
- 조세간소화국은 정책을 수립할 권한은 없으며 정책수립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업무범위는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이 집행하는 세금으로 함

3) 향후 계획 및 평가

- 조세간소화국은 2011년 약 400개에 달하는 조세감면(tax reliefs) 조치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간소화(small business tax simplification)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특히, 인적용역회사를 다루는 규정(the 'IR35' legislation)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간소화 연구의 일환으로 검토될 것임
 - 조세간소화국의 초기 발견사항은 2011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임
- 재계(business community)에서는 조세간소화국의 설립을 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노동조합(Unions)의 경우 조세간소화국이 대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세법상의 허점(loopholes)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사무총장은 조세간소화국이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줄이고, 부가가치세율은 인상하는 반면 부자를 위한 감세 규정은 완화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라.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조세동향 10-22]

- 영국에서는 2010년 10월 14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및 연금저축공제 축소 등의 개정세법 내용을 발표함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세율을 2011년 4월 6일부터 1%p만큼 인상함
 - 근로자 및 고용주(Class 1)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율을 1%p 인상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12%, 2%, 고용주에 대해서는 13.8%의 세율을 적용함

〈표 II-12〉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1)

주간 소득 (파운드)	개정 전		개정 후(2011. 4. 6~)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 110	0	0	0	0
110 ~ 844	11%	12.8%	12%	13.8%
844 ~	1%		2%	

- 자영업자(Class 4)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세율 역시 8%, 1%에서 9%, 2%로 1%p만큼 인상함

〈표 II-13〉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4)

주간 소득(파운드)	개정 전	개정 후(2011.4.6~)
~ 5,715	0	0
5,715 ~ 43,875	8%	9%
43,875 ~	1%	2%

□ 개인소득세에서 연금저축공제 혜택을 축소함

- 2011년 4월 6일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연간공제액(annual allowance)을 255,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로 인하함
- 2012년 4월 6일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평생공제액(lifetime allowance)을 180만파운드에서 150만파운드로 인하함

마. 영국 국세청의 사업계획(HMRC business plan)

[조세동향 10-25]

- 정부는 2010년 11월 2011-2015 사업연도에 대한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의 사업계획을 발행함
 - 정부는 사업계획을 통해 2014-2015 사업연도까지 연간 70억파운드의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국세청 사업계획의 목표는 약 420억파운드 규모의 세제상 결함(tax gap)을 막아 납세자로 하여금 현 조세제도가 간소하고 공평하며 국세청이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국세청 조직을 정비하여 납세자 대응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징수 분야에서 역시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임
 - 2015년까지 국세청의 조직규모를 줄이고 능률화함

-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납세자 중심 전략(customer-centric strategy)을 취하고 납세자의 수요, 능력 및 동기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함
 - 예를 들어, PAYE(pay as you earn)제도⁴⁸⁾ 적용시 실시간 정보(real-time information)를 이용하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선함
 - 조세회피 및 탈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업무분야에 집중 투자함
- 국세청 사업계획의 대부분은 재무부 장관이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의 예산으로 9월 19일 발표한 9억파운드를 사용하여 운영될 계획임
- 정부는 2011년 4월 9억파운드의 지출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 상세 사업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임
 - 또한 재무부 역시 국세청 및 조세간소화국과 협력하여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여 2011년 4월 이를 완성할 계획임

13. 오스트리아

가. 오스트리아 상원, 2011-2014 보충 예산법 승인

[조세동향 10-25]

- 상원은 2010년 11월 17일 2011-2014년도 보충 예산법(supplemental budget act)에 대한 검토를 마침
- 주요 내용은 재정지출을 16억유로만큼 낮추고 세수를 12억유로 정도 증가시킨다는 것임
 - 이는 하원의 승인 및 대통령의 비준 절차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임

48)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후 정산하는 제도임

- 오스트리아의 경우 경제 및 재정 상황은 다른 EU 국가와 비교하여 양호한 상태이나 국가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아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실업률과 재정결손액은 각각 5% 미만 및 GDP의 3.2%로 EU 평균인 10% 및 유로존 평균인 GDP의 6.8%와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고, 경제성장률은 2010년 1.3%로 예측되어 1%인 EU보다 높은 편에 속함

1) 법인세 분야

- 그룹기업 간 지분 보유에 대해 과도한 과세특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관련 적용배제 요건을 추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참가면세제도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해외 자회사가 지급배당에 대해 비용으로 공제받은 경우 국내 모회사의 배당금 수취액을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 그룹기업 간 차입을 통한 지분 보유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면제 및 이자비용 공제라는 이중의 과세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그룹기업 간 차입을 통한 지분보유에 대해 관련 배당수익은 과세면제하면서 관련 이자비용은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해 주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그룹기업 간 차입을 통한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룹기업 간 불필요한 자금대출 거래를 억제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함
- 향후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안정화 부담금(stabilization charge)으로 은행세(bank tax)를 도입함
 - 은행세는 은행을 대상으로 그 대차대조표 및 특정 파생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됨

-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세액은 대차대조표 총액에서 자본금, 잉여금, 대표적 소비자의 저축계좌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세율로는 과세표준액 중 첫 10억유로에 대해서는 0%, 10억유로 초과 200억유로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0.055%, 200억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085%를 적용함
- 특정 파생상품을 기준으로 한 세액은 거래장부(trading books)상 특정 파생상품에 0.0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정부는 은행세의 도입으로 약 5억유로의 추가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국내 은행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개인소득세 분야

-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관련하여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 증권 및 기타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은 취득 후 1년(부동산의 경우 10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한해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파생상품 포함)관련 자본이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
 - 오스트리아의 경우 상속세가 없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임
-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항목에 주식 및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을 추가함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개인주주 및 지분율이 25% 미만인 법민주주가 수취한 배당에 대해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주식 및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적용함

3) 기타 분야

- 주요 세수증가는 담뱃세, 비행기 티켓세, 유류세 등에서도 기대되고 있음
 - 담뱃세에서 1억~1억 5천만유로, 비행기 티켓세에서 6천만~9천만유로, 광유세(mineral oil tax)에서 4억 8천만~5억 3천만유로, 가솔린 사용세(gasoline usage tax)에서 2,500만~5,500만유로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14. 이탈리아

가. 이탈리아의 5,000유로 초과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

[조세동향 10-12]

- 이탈리아의 수상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2010년 5월 25일에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채택하였음
 - 이 패키지의 주요한 조치로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5,000유로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것임
- 이탈리아 정부가 현금거래를 제한한 목적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이탈리아는 EU의 권고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2009년 말 현재 재정적자가 GDP의 5.3%에 달하여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였음
 - 특히, 이탈리아의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1만 2,500유로에 달하는 금액까지 현금거래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⁴⁹⁾, 이런 과도한 현금거래는 조세회피를 유발하여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49) 출처: 비즈니스위크, 2010년 5월 25일자 보도.

-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회피된 조세를 확보하는 등의 긴축패키지를 통해 2012년까지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2.7%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이탈리아, 피지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10-23]

- 이탈리아 과세관청은 2010년 10월 6일에 피지배외국회사규정(이하, CFC rule)의 적용을 강화하는 적용지침(Resolution) 51/E를 발표함
 - CFC rule은 지배권을 갖는 외국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 과세관청은 2010년 7월 27일에 조세정보교류협정 체결국가(이하, white list 국가)⁵⁰⁾를 발표하였으며,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실체(entities)와의 거래에 대해서 CFC rule을 적용하도록 함
 - 2010년 10월 6일에 발표된 적용지침(Resolution) 51/E는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CFC rule의 적용을 강화하는 조치임
- 적용지침은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서 CFC rule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음
 - 즉, 적용지침에 따르면,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시에 CFC rule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 요건과 조세피난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활동 요건(active business test) : 외국실체는 실제로 조세피난처(blacklisted country)의 “시장 안에서” 제조업이나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조세피난처 요건(localization test) : 외국실체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50) <http://www.agenziaentrate.gov.it/wps/portal/entrate/documentazione>

1) 사업활동 요건(Active Business Test)

-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동은 실제로 능동소득(active income)을 발생시키는 활동임
 - 즉, 능동소득의 발생기준은 총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능동소득임을 의미함
- “시장 안에서”의 주된 활동은 외국실체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그 설립된 국가와 경제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활동을 의미함
 - 특히, 활동은 주로 그 국가나 지역의 공급자나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함
 - 지역(territory)은 피지배외국회사(이하, CFC)가 설립된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으로 관련성 있는 지역을 포괄함
- 금융보험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
 - 즉, 대부분의 예금, 투자, 또는 수입이 외국실체가 설립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2) 조세피난처 요건(Localization test)

- CFC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득 중 유효세율이 이탈리아 법인세율의 50%에 미달될 경우의 소득임
 - 즉, 외국실체의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유효세율이 그 외국실체가 이탈리아의 법인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CFC 소득으로 봄
 - 또한, CFC 소득은 현재 조세피난처가 아니거나 미래에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에 설립된 피지배외국회사의 소득을 포함함
- 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에서의 조세부담 수준과 유사한 경우 조세피난처에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음
 -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주회사의 소득이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서 조세를 부담한 능동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전액 발생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 요건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음

15. 포르투갈

가. 포르투갈 추가 긴축계획 의회 제출

[조세동향 10-13]

1) 1차 긴축계획 의회 통과

- 의회는 2010년 5월 12일 1차 긴축계획에 승인함
 - 이는 개인소득세에 45%(기존 42%)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조치를 담고 있음⁵¹⁾

2) 2차 긴축계획 의회 제출

-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추가 긴축계획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1차 긴축계획에 이어 안정 및 성장계획(Programa de Estabilidade e Crescimento)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관련 세법개정 사항은 관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단, 부가가치세 개정조치는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가) 법인세 분야

- 과세소득이 연간 200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5%p 인상함
 -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과세소득 중 첫 12,500유로에 대해서는 1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음

51) 1차 긴축계획의 상세 내용은 동향 10-07을 참조

나)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중 세 번째 구간까지는 1%p, 네 번째 구간부터는 1.5%p 인상함
 - 단, 이는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10년의 경우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월할 조정될 예정임

〈표 II-14〉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유로)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2010년	2011년 이후
~ 4,793	10.5	11.08	11.5
4,794 ~ 7,250	13	13.58	14
7,251 ~ 17,979	23.5	24.08	24.5
17,980 ~ 41,349	34	34.88	35.5
41,350 ~ 59,926	36.5	37.38	38
59,927 ~ 64,623	40	40.88	41.5
64,624 ~ 150,000	42	42.88	43.5
150,000 ~	45	45.88	46.5

-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1.5%p 인상함

〈표 II-15〉 포르투갈의 원천징수세율

항목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15	16.5
열거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20	21.5
거주자인 개인의 투자소득	20	21.5
비거주자인 개인의 근로, 직업, 연금, 투자소득	20	21.5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중간예납세율을 현 75%에서 76.5%로 1.5%p 인상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및 농부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75%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는 최종 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7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을 마감일로 하여 3회에 걸쳐 각각 총중간예납세액의 1/3씩 납부되어야 함

다)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20%에서 21%로 1%p 인상함
 - 포르투갈에서는 재정결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 왔음⁵²⁾
 - 2005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8%에 달하자 그 해 부가가치세율을 2%p만큼 인상(19%→21%)한 바 있음
 - 한편, 2006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9%, 2007년 GDP의 2.6%로 감소하자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인하(21%→20%)하였음

나. 포르투갈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0-23]

-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2011 예산안(2011 Budget Bill)을 의회에 제출함
 - 2011 예산안상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각종

52) 참고로, 1986년 이후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음

기간	세율(%)
1986.1.1 ~1988.1.30	16
1988.1.31 ~ 1992.3.23	17
1992.3.24 ~ 1994.12.31	16
1995.1.1 ~ 2002.6.4	17
2002.6.5 ~ 2005.6.30	19
2005.7.1 ~ 2008.6.30	21
2008.7.1 ~ 2010.6.30	20
2010.7.1 ~	21

공제항목의 검토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법인세 분야

- 과세특례(tax incentives) 총액한도를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의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의 75%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에 총액한도를 두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상기 비율을 75%에서 90%로 인상함으로써 과세특례 총액한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임
 - 또한 총액한도를 적용받는 과세특례 항목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열거되지 않은 모든 항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으로는 연구개발, 자유지역, 세율인하, 고용창출, 지주회사, 벤처캐피탈 관련 과세특례가 있음

- 법인 간 배당 시 적용되는 배당소득공제 중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50%의 공제를 폐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거주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i) 수취법인이 도관(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지 않고 ii) 배당금 수취법인이 배당 전 1년 동안 배당금 지급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또는 보유 지분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2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완전면세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10%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당소득을 완전면세하는 대신 50%만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예산안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분율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50%의 배당소득공제를 폐지할 방침임
 - 이 외에도 순수지주회사(SGPSs)에 대해 배당소득공제 적용시 일반법인과 같이 10%의 지분율 요건을 도입함

-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에 대해서는 특별과세를 도입함
 - 적용대상은 국내 신용기관 및 국외 신용기관의 국내지점임
 - 납부세액은 신용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금액에 기초하여 특정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0.01~0.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또한 일부 부외파생상품(out-of-balance derivatives)에 대해서는 0.0001~ 0.0002%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 납부기한은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함

- 이 외에도 2011 예산안에서는 증세를 위해 법인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혜택의 제한을 계획하고 있음
 - 대손금(bad debts) 및 주식양도이익의 재투자에 대한 공제를 제한함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청산절차(prior clearance procedure)를 도입함
 - 결손금 공제는 법상 요건에 따라 감사인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것임
 - 그룹법인 간의 결손금 통산은 그룹법인 간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제한을 받게 될 것임

2)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금소득공제 금액의 하향조정 및 각종 공제금액에 한도 도입 등의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현행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6,000유로로, 연금소득이 30,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3%의 비율로 공제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연금소득이 22,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의 비율로 공제금액을 줄일 방침임
 - 24.5% 이상의 한계세율⁵³⁾이 적용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금액에 한도를 도입함

53) 포르투갈에서 개인소득세 세율은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11.5%, 14%, 24.5%, 35.5%, 38%, 41.5%, 43.5%, 46.5%가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금액한도 적용대상 공제항목으로는 생명 및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훈련비, 주택 구입 이자, 자산관련 비용, 연금저축 납입액, 건물 개조비, 벤처캐피털 투자비용 및 재생에너지 장비 구입비용 공제가 있음

□ 이 외에도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여러 개정사항이 계획되어 있음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또는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
- 개인소득세 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을 2.2% 확대함
- 예를 들어, 46.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개시점을 150,000유로에서 153,300유로(독신자인 개인)로 인상함
- 주주 대여금 이자에 대한 과세를 종합 누진과세에서 21.5%의 단일세율 과세로 전환함

3)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하고 일부 경감세율 항목을 표준세율 항목으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 21%에서 23%로 인상함
- 일부 재화(주로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해서는 6%(또는 13%)의 경감세율 대신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16. 폴란드

가. 폴란드 2011-2013 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0-17]

□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8월 4일 2011-2013 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증세를 통한 재정결손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폴란드의 재정결손액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7.1%에 달함
-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소비세 인상 및 도입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 22%에서 23%로 1%p 인상함
 -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의 경우 현 7%에서 8%로 인상함
 - 기초 식료품에 대해서는 5%의 저세율을 도입함
 - 담배소비세(excise duties on cigarettes)를 2011, 2012 및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씩 인상함
 - 석탄 및 코크스에 대해 소비세(excise duty)를 도입함

나. 폴란드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등

[조세동향 10-22]

- 폴란드 재무부는 2010년 10월 9일 재정법(Law on Public Finance) 개정안을 발행함
 - 이는 재정결손 회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및 개인소득세 공제항목의 일부 폐지 등의 증세정책을 담고 있음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011년부터 22%에서 23%로 인상하고 경감세율은 3%, 7%에서 5%, 8%로 인상함
 - 또한 2010년 공공부채(public debt)가 GDP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2012년과 2013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을 각각 1%p씩 추가 인상하여 2013년에는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공공부채의 규모는 2011년 5월에 발표될 예정임

〈표 II-16〉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1 ¹⁾	2012 ²⁾	2013 ²⁾
경감세율	3%, 7%	5%, 8%	6%, 9%	7%, 10%
표준세율	22%	23%	24%	25%

주: 1) 2011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확정됨

주: 2) 2012 및 2013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는 2010 과세연도의 공공부채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함
 - 가족공제(family credit)
 - 인터넷 공제(internet relief)
 - 개인적으로 수행한 전문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또는 50%의 소득공제

17. 프랑스

가. 프랑스의 EIRL 도입

[조세동향 10-13]

- 프랑스는 개인사업자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도입하여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함
 - 새로운 법적 실체는 EIRL(entre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로 불림
 - 프랑스 의회는 EIRL의 도입에 관한 법률(the Law no. 2010-658)을 2010년 5월 12일에 채택함
- EIRL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자산·부채와 분리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함

- 따라서 개인의 자본과 분리된 사업 자본(capital)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귀속된 자산·부채는 그 개인과는 구분된 별도의 EIRL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야 함

□ EIRL은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세무 목적상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허용됨

- 즉, EIRL을 채택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납세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간의 차이로 인한 사업소득자와 법인 간의 과세상 차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첫째,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38,120유로까지는 15%, 38,12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33.33%의 세율이 적용됨
 - 둘째, EIRL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EIRL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셋째, 사회보험료(Social contribution)는 사업소득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됨
 - 넷째, EIRL에 귀속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됨

나.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지침 발표

[조세동향 10-20]

□ 지난 8월 24일 다음 4가지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상 처리지침이 발표됨

- 수쿠크(sukuk): 이자소득이 발행자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보유한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채권(bond)임
 - 특정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원금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기도 함
- 무라바하(murabaha): 판매자가 특정자산을 은행에 판매하면 은행은 제3자에게 일정 수익(margin)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이를 재판매하는 거래임
- 이자라(ijara): 처분권이나 매입권이 포함된 자산임대계약(rental agreement)임
 - 실무상 리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됨
- 이스티스나(istisna): 금융업자가 자신이나 거래처의 계정으로 개인자산이나 제3자인 건설업자의 부동산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는 거래임

- 금융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계약 시점에 총액(lump sum)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건설의 단계별로 자금을 지급함

1) 수쿠크

- 수쿠크는 세무적 관점에서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수쿠크 소유자에 배분된 보상금(remuneration)은 세무적 관점에서 이자로 취급됨
 - 따라서 이자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적용됨
- 또한 비거자인 수쿠크 소유자가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도 포함됨

2) 무라바하

- 무라바하 계약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목적상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융소득은 일상적인 금융수단을 통해서 수취하는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 특히,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에 적용됨
- 은행이 수취하는 금융소득(중개수수료 포함)은 구매자가 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음

3) 이자라

- 이자라 거래는 프랑스의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리스거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리스거래에 관한 규정을 이자라 거래에 적용할 수 있음

4) 이스티스나

- 이스티스나 거래는 세무적 관점에서 세법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연된 건설자금의 지급으로 인해 금융업자가 수취하는 소득은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프랑스 각료회의의 2011년 재정법 채택

[조세동향 10-22]

- 프랑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9월 29일에 2011년 재정법(Finance Bill)을 채택하였음
 - 2011년 재정법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budget deficit)를 GDP의 3%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i) 조세혜택과 조세제도상의 허점(loop-hole)을 감소시켰으며, (ii) 특정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도록 제정됨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요한 2011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

- 경제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R&D세액 환급제도를 상시적으로 모든 법인에 허용함
 - R&D세액 환급제도 : 적절한 R&D 지출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하여 R&D 세액을 즉각적으로 환급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R&D 관련 지출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당기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후, 미공제세액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함
 - 프랑스는 R&D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 2009년 한시적으로 R&D세액 환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세법개정으로 이를 상시화함
-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자본이득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특히, 관련 소득의 경우 장기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특수관계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관계를 모두 포괄함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를 손금에 일률적으로 산입하거나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따라서 2011년 이후에는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를 손금에 일률적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보험회사가 설정한 준비금(reserve)에 관하여 전액 손금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보험회사 설정 준비금은 10%의 저율로 과세하게 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설정한 준비금의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함

2) 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현행 40%에서 41%로 인상됨
 - 최고한계세율 구간은 69,783유로를 초과하는 구간임
 - 2009년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II-17〉 2009년 소득세율

과세소득구간(유로)			세율
0	~	5,875	0
5,875	~	11,720	5.5%
11,720	~	26,030	14%
26,030	~	69,783	30%
69,783	초과		40%

- 분리과세 선택시의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8%에서 19%로 인상됨
 -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18%의 일률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유효세율은 30.1%임
-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인상됨
 - 프랑스의 경우, 자본이득은 일률과세(flat tax)함

- 유가증권 등 동산의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8%에서 19%로 인상됨
-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인상됨
- 면세 가능한 동산의 소액자본이득에 관한 면세가능 한도의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25,830유로 이하의 동산의 소액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음
- 주된 거주지 관련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된 거주지의 건설·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프랑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부담금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함

3) 부가가치세

- TV, 전화, 및 인터넷 통합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인 19.6%로 확정하여 통합서비스에 대한 세율을 명확하게 규정함
- 현행 세법에서는 통합서비스에 포함된 일부 개별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경감세율인 5.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이 명확하지 않았음

18. 핀란드

가. 핀란드 2011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0-17]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0년 7월 30일 2011 예산안(budget proposal for 2011)을 발표함
 - 2011 예산안은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함
 - 이는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2011 예산안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비세 분야에 서 세원 발굴 및 특정 항목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사탕류, 초콜릿 및 아이스크림에 대해 0.95유로/kg의 소비세를 도입함
 - 청량음료(soft drinks)에 대한 소비세를 현 0.045유로/l 에서 0.075유로/l 로 인상함
 - 이는 현재 면세되고 있는 광천수(mineral water)에도 적용될 예정임

-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세제를 개편 하고 폐기물세 및 복권세의 세율을 인상함
 - 2011년 3월 1일부터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함
 - 현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의 일반 소매가격에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음
 - 전기,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에 대한 에너지세(energy taxes)를 인상함
 - 또한 에너지세를 에너지 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함
 -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에너지세 인상으로 약 7억 5천만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폐기물세(waste tax)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세율을 현 30유로/ton에서 2011년 40유로/ton, 2013년 50유로/ton으로 인상함
- 복권의 상금에 대해 부과되는 복권세(lottery tax) 세율을 현 8.25% 또는 9.5%(복권 사업 주최자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에서 10%로 인상함

19. 헝가리

가. 헝가리 의회 세제개편안 승인

[조세동향 10-17]

-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중도우파 Fidesz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승인함
 - 세제개편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 도입, 공공부문 과다 보너스에 대한 중과세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세(bank tax)를 도입함
 - 은행세는 대차대조표 총액을 기준으로 HUF 50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0.5%, 이하 인 부분은 0.15%의 세율로 과세함
 -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을 기준으로 6.2%의 세율로 과세함
 - 이는 9월 10일 및 10월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함
 - 정부는 은행세 부과로 약 HUF 2천억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HUF 200만을 초과하는 공공부문 보너스에 대해서는 98%의 세율로 과세함

- 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수취분에 한함

2)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

- 2010년 7월 1일부터 법인세에 2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하여 10% 세율 구간을 추가함
 - HUF 5억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 19%에서 10%로 인하함
 - 10%의 세율은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HUF 5억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현 19%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

나. 헝가리 의회 위기세제 승인

[조세동향 10-23]

- 의회는 2010년 10월 18일 위기세제(crisis tax package) 법안에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자통신, 소매부문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es) 도입, 법인세 분야에서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돕고 재정결손⁵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1) 특별세 도입

- 에너지(energy),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 소매부문(retail sectors)에 대해 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특별세(special taxes)를 도입함
 - 에너지 공급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1.05%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함
 - 전자통신 회사 및 소매부문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함

54) 헝가리 정부는 재정결손 규모를 2010년 GDP의 3.8%, 2011년 GDP의 3%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II-18〉 헝가리의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에너지 부문	전자통신 부문		소매부문	
	수입금액(HUF)	세율(%)	수입금액(HUF)	세율(%)
1.05%	~ 5억	2	5억 ~ 300억	0.1
	5억 ~ 50억	4	300억 ~ 1천억	0.4
	50억 ~	6.5	1천억 ~	2.5

- 특별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는 지난 7월 통과한 금융세와 합산하여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간 HUF 3,430억으로 추산되고 있음

2) 법인세 세율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 2013년부터 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을 도입함
- 현행 법인세 표준세율은 19%로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2013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함

〈표 II-19〉 헝가리의 법인세율

과세표준(HUF)	개정 전			개정 후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이후	2013년 이후
~ 5천만	10% ¹⁾	10%	10%	10%
5천만 ~ 2억 5천만	19%			
2억 5천만 ~ 5억		19%		
5억 ~			19%	

주: 1) 요건 충족시 적용함

20. 호주

가. 호주의 2010/11 예산안

[조세동향 10-14]

1) 개요

- 호주 정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자원초과이익(resource surplus profits)에 대해 새롭게 과세(levy)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11예산안을 2010년 5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2010년 5월 11일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0년 6월 24일에 양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6월 28일에 의회를 통과함⁵⁵⁾
- 호주 정부는 396억호주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⁵⁶⁾
 - 총세입은 3,218억호주달러이고 총세출은 3,546억호주달러이며 그 결과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328억호주달러임
 - 순자본투자(net capital investment)는 △68억호주달러임
 - 호주 정부는 순운영수지와 순자본투자를 합하여 396억호주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예산안에서 GDP의 1%를 초과하는 조세수입이 달성될 때까지는 조세지출의 증가를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5-16에는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예산안의 주요 목적(Initiatives)은 과세조치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 인프

55) <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query=Id%3A%22legislation%2Fbillhome%2Fr4359%22>

56) <http://www.budget.gov.au/2010-11/content/overview/html/index.htm>

라의 구축 및 발전,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도모, 전체적인 경제성장, 강력하고 공정한 분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시설의 네트워크 강화임

- 과세조치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안은 근로소득면세점 인상, 이자소득세 감소, 표준공제 인상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안은 성장유지를 위한 기술투자(6.61억호주달러), 새로운 인프라펀드(560만호주달러), 철도네트워크 재생(10억호주달러)을 포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안은 재생에너지 미래펀드(6.52억호주달러)를 포함하고 있음
-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예산안은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 Super Profits Tax, RSPT)부과, 법인세율의 인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가상각자산 중 즉시 비용화 대상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강력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예산안은 연금지출액(Super Guarantee)의 인상(9%→12%), 소득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인 소득자에 대한 분배금 증가(500호주달러), 소득이 50,000호주달러 이하의 고연령근로자에 대한 분배금 수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의료시설의 네트워크를 위해 예산안은 의료시스템의 현대화에 22억호주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소득세 관련 예산안

- 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세제조치는 근로소득면세점 인상, 납세자 표준공제 인상, 이자소득세 감소 방안이 있음
- 2010년 7월 1일부터 호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를 확대함
 - 16,000호주달러의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면제함
 - 이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면제되는 세액을 1,500호주달러로 인상함⁵⁷⁾

57) 소득세율은 0~6,000호주달러까지는 0%, 6,001~37,000호주달러까지는 15%(2010/11기준)이므로, 소

- 납세자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금액을 500호주달러에서 1,000호주달러로 인상함
 - 납세자가 근로와 관련된 비용 및 납세를 위한 컨설팅비용을 세무상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무기록을 남기고 지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지만, 납세자표준공제는 납세자가 관련 비용을 입증할 필요없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
 - 납세자표준공제금액은 2012/13(2012년7월 개시사업연도)은 500호주달러이고, 2013/14 (2013년7월 개시사업연도)는 1,000호주달러로 인상함

- 소액저축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소득 1,000호주달러까지는 소득세를 50% 감면함
 - 소득세를 감면하면 납세자가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호주의 금융시스템을 더욱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이 되는 이자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예금, 채권(bonds), 사채(debentures), 연금(annuity)의 이자임
 - 이 조치는 570만명의 저축자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타조치로서는 은행의 원천징수세 인하와 관리투자신탁의 과세구조를 특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조치로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단계적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
 - 관리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s)에 대한 과세구조를 특정화하여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을 감소하며 납세비용을 낮추고자 계획하고 있음

3) 법인세 관련 예산안

-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세제조치는 법인세율의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중 즉시 비용화 대상 확대가 있음

특이 16,000호주달러인 경우에 6,000호주달러는 세금이 '0'이고, 10,000호주달러는 세율 15%를 적용하여 세액은 1,500호주달러가 됨. 이 때, 1,500호주달러까지 세액이 감면되므로 16,000호주달러가 근로소득의 면세점이 됨

- 법인세율을 30%에서 29%로 인하하여 호주세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2010년 5월 11일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즉각적인 2%(30%→28%) 세율 인하,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2%의 세율 인하를 계획하였으나, 자원초과이윤세의 영향으로 인하폭이 제한됨
 - 2013/14(2013년7월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별 없이 전체 기업에 대하여 29%로 법인세율을 인하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화가 가능한 감가상각자산의 기준금액을 1,000호주달러에서 5,000호주달러로 인상함
 - 이 조치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감가상각의 계산을 간소화하여 세무 신고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 조치는 2012/13부터 적용됨

4) 자원초과이윤세 관련

-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세제조치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자원초과이윤세(Resource Super Profits Tax)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임
 - 호주 정부는 자원이윤세에 대한 과세가 자원산업 초기단계에 경감시켰던 세금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 호주 정부는 논란을 거치면서 최초 의회에 제출했던 (안)보다는 광산업계 등의 입장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2일에 자원초과이윤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음
 - 최초안보다 세율을 낮추고(40%→30%)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과세액을 감소함
 - 2012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국내외 자원생산업체는 연간 수익의 30%를 자원개발 초과이윤세로 지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
 - 5,000만호주달러 이하의 자원운용이익은 자원초과이윤세를 면제함
 - 철광석(iron ore)과 석탄(coal) 외에 자원운용에 대해서는 자원초과이윤세를 면제함

나.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

[조세동향 10-24]

- 호주 과세당국은 2010년 10월 27일에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를 조화시키는 세무규칙(TR 2010/7)을 발표함
 - 이 규칙은 국외특수관계기업과의 재무계약(financial arrangements)에 영향을 줄 것임
- 이 규칙 이전에 이전가격과세와 과소자본세제를 조화시키는 규정은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과소자본세제의 한도(safe harbor) 내에서는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세무규칙(TR 2010/7)에서는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순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순서는 이전가격세제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이전가격세제를 제한할 수 없음
 - 이전가격세제를 통하여 먼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무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성을 결정해야 함
 - 전 단계에서 결정된 재무비용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부채에 대한 재무비용의 공제 가능성을 검토함
 - 이전가격세제는 과소자본세제의 한도(safe harbor)에 우선(override)하여 적용됨
 - 납세자가 과소자본세제의 한도 내의 부채수준이더라도 정상가격(독립적인 제3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의 이자)으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때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음
 - 오히려 개별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 호주의 과소자본세제

- 과소자본세제는 자본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임
 - 과소자본세제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자본금을 통한 자본조달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적인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임
 - 외국인투자자가 호주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호주의 거주자가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함
 - 호주의 과소자본세제는 1987년에 도입되어 2001년에 상당부분이 개정됨
 - 지급이자가 공제가능한 한도(safe harbor)를 두고 있음
 - 통상적인 사업을 위해 투자된 자본금액의 3배가 한도임

21. OECD의 Taxing Wages: 2009년 근로소득세 감소 동향

[조세동향 10-11]

- OECD의 연차간행물 『Taxing Wages』에 의하면,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OECD 30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 통계

- OECD 국가에서 인건비(labor costs) 중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대비 2009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합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뉴질랜드, 터키, 스웨덴으로 2008년 대비 2009년에 각각 2.66%p, 2.29%p, 1.65%p 감소하였음

〈표 II-20〉 OECD 국가의 근로소득 관련 조세¹⁾

국가	2009년 인건비 대비 근로소득 관련 조세(%) ²⁾	2008년 대비 변화율(%p)			
		총변화율 ((1)+(2)+(3))	소득세(1)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2)	사용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3)
벨기에	55.2	-0.54	-0.50	0.00	-0.04
헝가리	53.4	-0.72	0.11	0.17	-1.00
독일	50.9	-0.57	-0.52	-0.03	-0.03
프랑스	49.2	-0.05	-0.05	0.00	0.00
오스트리아	47.9	-0.91	-1.05	-0.02	0.10
이탈리아	46.5	-0.03	-0.03	0.00	0.00
스웨덴	43.2	-1.65	-1.11	0.04	-0.57
핀란드	42.4	-1.39	-0.88	0.14	-0.66
체코공화국	41.9	-1.55	0.05	-1.05	-0.55
그리스	41.5	-0.06	-0.06	0.00	0.00
덴마크	39.4	-1.28	-1.25	-0.03	0.00
스페인	38.2	0.19	0.33	0.01	-0.15
네덜란드	38.0	-0.96	1.18	-1.86	-0.29
슬로바키아	37.6	-1.17	-1.17	0.00	0.00
터키	37.5	-2.29	-0.01	0.40	-2.68
노르웨이	37.4	-0.12	-0.12	0.00	0.00
포르투갈	37.2	-0.07	-0.07	0.00	0.00
폴란드	34.0	-0.52	-0.52	0.00	0.00
룩셈부르크	34.0	-1.16	-1.59	0.08	0.35
영국	32.5	-0.34	-0.21	-0.06	-0.07
캐나다	30.8	-0.50	-0.55	0.01	0.04
미국	29.4	0.22	-1.15	0.00	0.02
스위스	29.3	0.09	0.09	0.00	0.00
일본	29.2	-0.26	-0.12	0.00	-0.14
아일랜드	28.6	1.54	0.35	1.18	0.00
아이슬란드	28.3	0.03	-0.72	0.00	0.74
호주	26.7	-0.21	-0.57	0.00	0.36
한국	19.7	-0.27	-0.30	0.02	0.01
뉴질랜드	18.4	-2.66	-2.66	0.00	0.00
멕시코	15.3	0.21	0.17	0.00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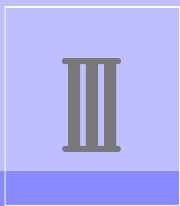
주: 1) 근로소득 관련 조세(Tax Wedge)에는 소득세(income tax) 및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이 포함됨

2) 평균임금(average wage)을 획득한 독신자인 개인(single individual)을 기준으로 함. 이 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 근로자(average worker)의 연간 총근로소득을 의미함.

2) 감소요인

- 2009년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정책 및 고용촉진정책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을 인하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음
 -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특히 저소득 계층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음
 - 또한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중 고용주 부담분을 인하하여 회사가 고용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하였음

- 이 외에도 경제위기에 따라 평균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음
 - 독일, 일본,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금융 및 경제위기 결과 평균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소득세가 누진과세체제이기 때문에 소득세 징수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아 시 아

III

아 시 아

1. 대만

가. 대만 입법부 산업혁신촉진법 승인

[조세동향 10-11]

- 대만 입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산업혁신촉진법(SPII: Statute for Promoting Industrial Innovation)을 승인하였음
 - 산업혁신촉진법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고용보조금(Employment Subsidy),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최초 35%의 투자세액공제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5%를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총납부할 법인세액의 30%를 한도로 함
 - 중소기업(SMEs)에 종업원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원(Executive Yuan)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부는 새로운 종업원 고용 1인에 대해 1년간 월 CNY10,000(약 \$1,460)의 보조금 지급을 논의한 바 있음
 - 보조금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고 있음
 - 산업혁신촉진법 승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법인세율은 최종적으로 현행 20%에서 17%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나. 대만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조세동향 10-15]

- 대만은 외국인에 대해 대만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함
 -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Business Tax Act, 營業稅法) 제7-1조의 내용임
 - 대만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사람은 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제 7-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인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 4월 20일에 의회를 통과하고, 2010년 5월 5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외국인은 외국기업, 대리인, 그룹, 단체(organizations) 중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임

- 이 규정은 다음에서 서술하는 금액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내용임
 - 첫째, 대만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한정함
 - 구입된 재화와 용역은 적절한 상업 활동과 대만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 둘째, 1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5,000뉴타이완달러(약 156달러)를 초과하고 재화와 용역의 구입액이 100,000뉴타이완달러(약 3,100달러)이상이어야 함
 - 셋째, 다음에서 서술하는 환급에 대한 적용제외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승용차의 구입, 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종업원 등을 위한 유흥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해당하면 환급되지 않음
 - 넷째,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수취하는 국가에서도 대만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해야 함

- 외국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후 6개월 이내에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함
 -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계산서를 가지고 신청해야 함
 -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몰수됨

- 대만 과세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만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해외활동을 촉진하며, 외국인의 대만 내 시설에 대한 이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함
 - 대만의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통하여 대만 거주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대만 거주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될 것임
 - 이러한 혜택은 대만의 수출증대 및 해외활동 촉진에 도움을 줄 것임
 - 대만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대만 내의 호텔, 식당, 교통시설 등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임

다. 대만의 보험보상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의 개정

[조세동향 10-20]

- 대만 재무부는 2010년 8월 1일에 투자형 보험계약(investment-type insurance policies)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법 규정을 신설함
 - 이 규정은 투자소득을 보험보상액(insurance compensation)으로 가장하여 상속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개인의 보험보상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세나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보험보상액으로 수령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6일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번 조치는 상속세법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적격보험계약(Qualified Insurance Policies)에 대한 상속세는 적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의 보험보상액에 대해서만 과세면제를 하도록 함⁵⁸⁾

- 적격보험계약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적격비율(Qualified Ratio)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비율은 사망지급액(death payment)을 보험계약계정(insurance policy account)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으로 정의됨
- 금융위원회는 계약자의 연령에 따라 최저적격비율을 달리하고 있음
 - 투자형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15~40세인 경우 130%
 - 투자형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41~70세인 경우 115%
 - 투자형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71세 이상인 경우 101%
- 예를 들어 40세의 A씨가 투자형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계정이 100만뉴타이완달러라면 130%의 최저적격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이 30만뉴타이완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적격보험계약(Qualified Insurance Policies)에 대한 소득세는 계정을 보험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달리 과세하고 있음⁵⁹⁾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정을 보험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도록 함
- 개인별 연간 보험 프리미엄은 1인당 2만 4천뉴타이완달러의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고 보험보상액은 3천만뉴타이완달러까지 과세면제됨
 - 보험보상액이 3천만뉴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세율이나 20%의 최저한세로 과세될 수 있음
- 투자계정으로 분류된 소득은 그 투자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등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58) EGTL(Estate and Gift Tax Law) article 16(1)(9)

59) ITL(Income Tax Law) article 4(1)(7)

2. 일본

가. 일본의 그룹법인세제

[조세동향 10-18]

- 일본은 2010년 세제개정에서 다양화되는 법인의 조직 형태에 대응하고, 과세중립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룹법인세제’를 신설함
 - 2010년 세법개정안은 2010년 3월 말에 확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룹법인세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100% 자본관계로 묶여진 그룹 내의 법인들은 단일실체처럼 경영하게 되는데, 그룹법인세제는 이러한 경영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세제임
 - 그룹 내의 거래에 대한 과세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되는 연결납세제도, 조직재편성세제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함

- 연결납세제도는 선택제이지만, 그룹법인세제는 강제적으로 적용됨
 - 연결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적용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그룹납세제도는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지 않아서 개별실체가 납세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완전지배관계를 가지는 그룹 내의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체로 보기 위한 세제임

- 주요 개정은 100%그룹 내 법인 간에 자산의 양도거래, 기부거래, 현물분배, 배당거래, 자기주식취득거래 등에 대한 과세관계를 변경하는 내용임

1) 100%그룹 내 법인 간의 자산의 양도거래

- 내국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완전지배관계의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이연함

- 개정 전에는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발생한 양도손익을 양도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였음
-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직재편세제 중 적격사후설립제도가 폐지됨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 이연된 양도손익은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유 발생연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됨
 - 일정한 사유는 양도손익조정자산의 양도, 상각, 환매, 대손, 제거가 발생한 경우임
 -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양수한 법인 은 최초로 양도한 법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

2) 100%그룹 내 법인 간의 기부거래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관계의 내국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되고 기부받은 법인의 수증이익은 익금불산입됨
 - 개정 전에는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하였고, 기부받은 법인은 기부받은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였음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됨

3) 100%그룹 내 법인 간의 현물분배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현물분배를 하는 경우, 현물분배의 직전 장부가액으로 피현물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적격현물분배제도를 신설함
 - 현물법인의 직전 장부가액과 현물분배 당시의 시가는 차이가 나므로 피현물법인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익적립금에 가산함
 - 개정 전에는 현물분배법인은 양도손익을 계상하였고, 피현물분배법인은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였음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현물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됨

4) 100%그룹 내 법인 간의 자기주식취득거래

-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주식을 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모회사는 의제배당은 계상하지만 양도손익은 계상하지 않음
 - 개정 전에 모회사는 의제배당으로 계상하고 양도손익을 계상함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의제배당 사유에 의해 금전 기타 자산의 교부를 받은 분부터 적용됨

5) 청산소득과세 폐지

- 청산소득과세가 폐지되고, 관련 소득은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게 됨
 - 개정 전에는 내국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해산 직전까지는 통상의 소득과세를 하고 해산 이후부터 청산까지는 청산소득과세를 하였음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됨
- 변경되는 제도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기한경과 이월결손금도 공제하도록 함

나. 일본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이 제출한 세제개정안

[조세동향 10-20]

-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은 세법개정 과정의 일부로서 세법개정안을 재무성에 제출했으며 이는 정부세제조사회에서 논의된 후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됨
-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일본의 현행 법인세율은 납입자본금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법인의 소득 및 납입자본금이 100만엔 이하인 법인의 소득 중 800만엔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임

- 금융청은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저율과세 조치를 연장하고 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할 것 등을 제안함

- 금융청은 개인의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을 제안함
 - 현재 경감세율은 10%이며, 특례적용기한이 완료되면 20%세율로 전환됨
 - 일본은 2003년부터 개인이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경감세율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만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
 - 연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언론 등에서는 연장기한을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연혁을 보면 일몰기한을 몇 차례에 걸쳐 연장했음
 - 경감세율 적용에 대한 법안은 200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일몰시점은 2007년 12월 31일이었음
 - 2007년에 해당 규정의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2008년에 금액적 제한을 두어 2009년과 2010년에 매년 500만엔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2009년에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경감세율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금융청은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기한을 현재의 3년에서 보다 연장하거나 기간의 제한을 없앨 것을 제안함

- 금융청은 상장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관련 이익 및 배당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도 상계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현재 일본은 상장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이로 인한 이익 및 배당에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도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 가능한 소득의 종류를 늘릴 것을 제안함

- 금융청은 외화 관련 거래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를 제안함
 - 현재 일본은 외환차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금융청은 외환차익 및 외화 관련 이익을 일반적인 잡소득과 구분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함

〈참고〉 일본 세제개정의 결정과정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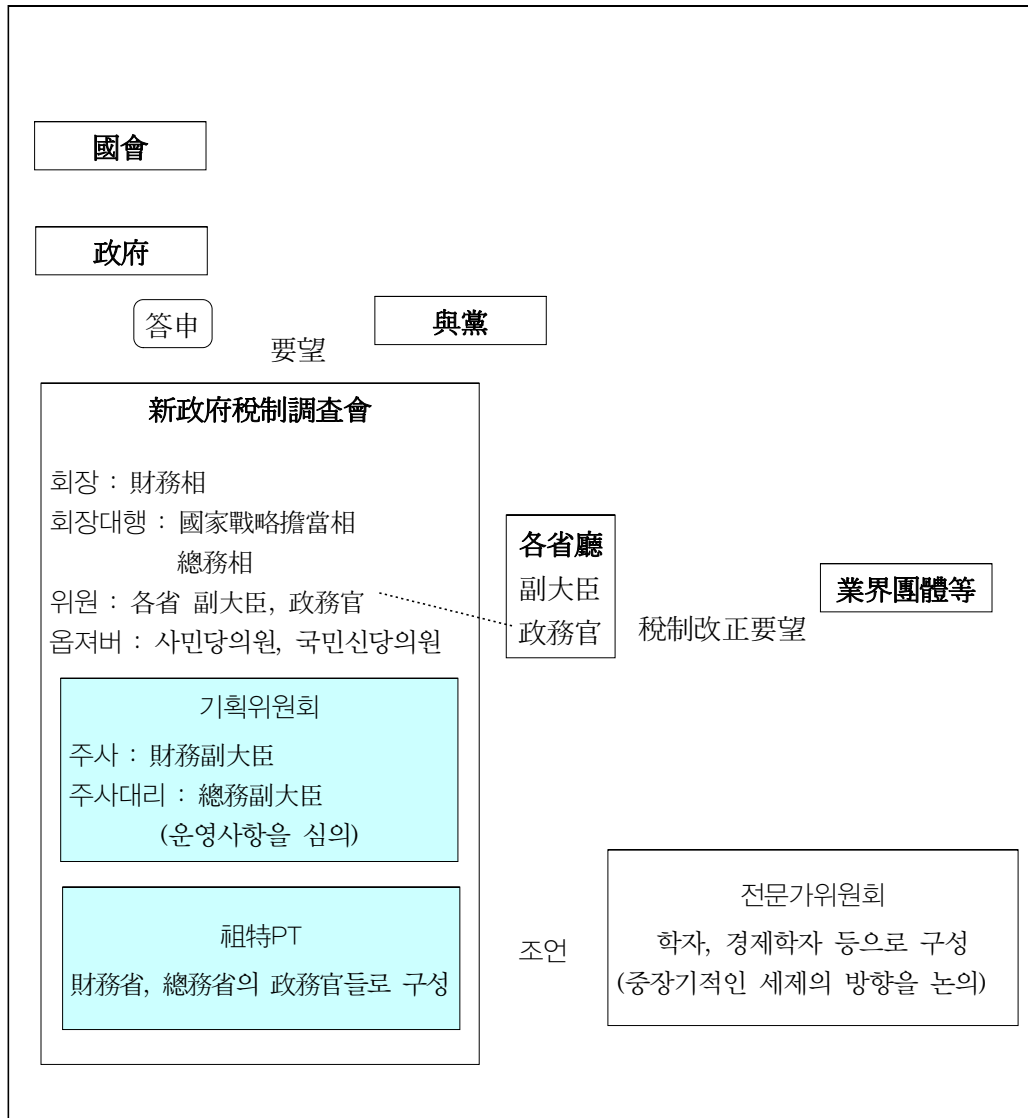
- 일본은 2009년 8월 말에 행해진 제45회 중의원 의원총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실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제개정의 결정과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
- 종래의 세제개정은 여당의 세제조사회가 각 성의 세제개정요망과 관련단체의 세제개정요망을 종합한 여당세제개정요망 및 이를 발전시킨 여당세제개정대강을 만들고, 정부는 여당세제개정대강을 바탕으로 세제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여 여당은 연도 내에 당해 법안을 가결·성립시키는 과정을 거쳤음
 - 기존의 과정에서 각 성은 매년 8월경에 다음 연도 세제개정요망을 발표함
 -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일본경단련, 상공회의소, 세무사회, 의사회 등의 경제단체나 업계도 요망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유력정치가에게 의사를 전달함
 - 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민당의 세제조사회가 개정요망을 결정함
 - 자민당 내부에서 각 성 및 관련단체의 개정요망을 모은 책자에 「○, ×」를 표시하여 가부를 결정함
 -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당세제조사위원회에서 세제개정요강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세제에 밝은 소수의 유력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
 - 이와는 별도로 수상의 자문기구로서 정부세제조사회가 있는데, 정부세제조사회는 학자나 경제계, 각종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세제조사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의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60)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issue/0668.pdf>

- 기존의 세제결정 과정의 단점을 극복하고 권한을 정부에 집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세제조사회를 폐지하고 신정부세제조사회를 신설하였으며, 역할을 조정함
 - 세제개정 논의가 복수의 조직에서 따로따로 행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특히 여당세제조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단점이 있었음
 - 신세제조사회의 회장은 재무대신, 회장대행은 총무대신 및 국가전략담당대신, 위원들은 각성의 부대신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의사결정을 정부로 일원화하기 위함
 - 종래의 정부세제조사회를 폐지하고 대신에 중장기적 관점에 대하여 조언하기 위하여 신세제조사회 아래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
 - 논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정부세제조사회의 논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참고로 신정부세제조사회의 구조도는 [그림 III-1]과 같음
 - 각 성은 업체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신정부세제조사회의 위원인 부대신에게 요망을 전달하도록 함
 - 신정부세제조사회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획회의에서 회장, 회장대행인 세 명의 대신이 협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회의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방향을 조정함
 - 신정부세제조사회의 위원은 학자 등이 아니라, 각 성부 대신이 담당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위에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함
 - 정부는 신정부세제조사회를 중심으로 세제개정답신을 마련하고 여당의 세제개정요망을 반영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됨

[그림 Ⅲ-1] 신정부세제조사회가 신설된 후 세법결정과정



다. 일본의 담배소비세 40% 인상

[조세동향 10-22]

- 일본은 2010년 10월 1일부터 담배에 관한 세금을 40% 인상⁶¹⁾하였는데 개정 전·후의 담배세율은 <표 III-1>과 같음

〈표 III-1〉 담배 관련세 개정 전·후의 비교

(단위 : 엔)

구분	세목	세율(1,000개비당) ¹⁾		
		개정 전	개정 후	인상액
국세	담배세	3,552	5,302	1,750
	담배특별세	820	820	-
지방세	도부현담배세	1,074	1,504	430
	시정촌담배세	3,298	4,618	1,320
합계		8,744	12,244	3,500

주: 1) 자료에서는 제조담배와 구3급품의 제조담배로 나누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조담배만을 제시하였고, 구3급품의 제조담배도 40%의 세율이 인상됨

자료: 일본국세청, 「たばこ税手続品課税関係 Q&A」, 2010. 6

- 제조담배는 ① 쥬련, ② 파이프담배, ③ 엽쥬련, ④ 각련, ⑤ 종이용 담배, ⑥ 파이프용 담배로 구분됨
- 쥬련 이외에 제조담배의 수량에 대해서는 ②와 ③은 1그램을 1개비로 환산한 것이고, ④, ⑤, ⑥은 2그램을 1개비로 환산한 것임

61) <표 III-1>에서 인상액 총액/개정 전 세액(=3,500/8,744)으로 계산하여 40%임

〈참고 1〉 일본의 담배세 구성과 과세체계

- 일본의 담배세는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있으며,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는 담배세와 담배특별세, 지방세는 도부현 담배세와 시정촌 담배세가 있음
 -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됨
 - 국세인 담배세는 제조담배가 제조장에서 출하될 때, 제조업자에게 부과됨
 - 도부현 담배세나 시정촌 담배세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조담배를 판매할 때 도매업자에게 부과됨

〈참고 2〉 우리나라의 담배세 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제조장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제조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서울은 〈표 Ⅲ-2〉와 같음

〈표 Ⅲ-2〉 우리나라의 담배세율

담배의 종류	세율
궐련	641원/20개비
파이프담배	1,150원/50그램
엽궐련	3,270원/50그램
각궐련	1,150원/50그램
전자담배	400원/용액1밀리리터당

〈참고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담배세율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3급품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만 있을 뿐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쉐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약 3.5배⁶²⁾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약 4.9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우리나라의 세율은 1개비당 32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일본은 개정 전에는 1개비당 8.7엔의 세금을 납부하다가 개정 후에는 12.2엔의 세금을 납부하게 됨
 - 한국과 일본의 환율을 1:13 정도로 보고 계산함

- 파이프담배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4.9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6.8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파이프담배는 1그램당 23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세율도 1그램당 1본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는 1개비당 8.7엔, 개정 후에는 1개비당 12.2엔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엽쉐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1.7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4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엽쉐련은 1그램당 65.4엔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1그램을 1본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세율인 1개비당 8.7엔과 개정 후 세율인 1개비당 12.2엔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각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2.4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3.4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각련은 1그램당 23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세율은 2그램을 1본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음
 - 일본의 개정 전 세율인 1개비당 8.7엔과 개정 후 세율인 1개비당 12.2엔의 세금과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세율은 46원이 됨

62) 일본의 경우 세율 인상 전에는 $8.7\text{엔} \times 13 = 113.1\text{원}$ 의 담배세를 부담하다가 세율 인상 후에는 $12.2\text{엔} \times 13 = 158.6\text{원}$ 을 부담하게 되어, 인상 전에는 약 3.5배($=113.1/32$), 인상 후에는 약 4.9배($=158.6/32$)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음

3. 중국

가. 중국의 자원세 확대 방안

[조세동향 10-16]

- 중국정부는 2010년 6월 1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자원세의 세율을 1%에서 5%로 인상함
 - 자원세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과세대상인 원유와 가스 중 생산을 위해 사용된 경우나 유전지역에서 연료의 수송에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됨
 -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내 원유의 13%, 천연가스의 29%가 매장된 지역으로 원유와 가스 생산이 이 지역 수입의 30%를 차지함
- 이 후 중국정부는 2010년 7월 8일에 자원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신장지구 외의 다른 지역까지 자원세를 확대하는 방안과 자원세의 부과대상을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다른 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대로 자원세가 확대되면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에 대한 세수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비용을 증가시켜 사용량을 감소시키므로 천연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나. 중국의 환경세 도입 논의

[조세동향 10-18]

1) 도입 배경

-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09년 11월에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탄소집약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5%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 재무부는 2009년 10월에 환경관련 세제의 도입 시기 등이 포함된 탄소세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는 일반환경세, 탄소세, 연료세의 개정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
 - 단기적으로는 연료세(연료와 천연자원에 대해 과세)를 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환경세와 탄소세를 과세하는 방안임
 - 탄소세는 2012년이나 2013년 이후, 일반 환경세는 2014년 이후에 도입할 예정임
 - 탄소세의 과세대상은 이산화탄소이며,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함
 - 과세대상은 사업활동 중에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이산화탄소임
 - 납세의무자는 이산화탄소를 환경에 배출시킨 개인과 법인임
 - 세율은 과세표준이 방출량이므로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결정될 것임
 - 탄소세의 세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3의 비율로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탄소세 세수를 에너지 유지,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재생자원,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 등에 배정할 계획임

2) 환경세 도입을 위한 조치

- 중국 정부는 4개의 시범지역에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안을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에 제출함
 - 환경세의 부과대상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오염된 물이 될 것임
 - 시범지역은 후베이(Hubei), 후난(Hunan), 장시(Jiangxi), 간쑤(Gansu)임
 - 도입안 중 세율, 과세면제, 과세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다.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

[조세동향 10-23]

- 중국국가위원회(China's State Council)는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와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의 대상을 확대하여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부담시키기로 함
 - 이 조치는 중국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임
 - 재정부에서는 외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공평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함
 - 이 부분은 개정 전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차이였으나, 이번 조치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가 없어짐

- 중국은 1980년대 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 등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해 왔음
 - 중국은 1980년대 초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을 국내에서 소유하느냐, 외국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별도의 과세체계를 유지했었음
 - 중국은 1994년부터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과세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인 외자기업특례조치에 대한 폐지를 시행해 오고 있음
 - 구체적인 세목으로는 VAT, 소비세(consumption tax), 사업세(business tax),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 토지이용세(land use tax), 교통시설이용세(vehicle and vessel use tax), 부동산세(real estate tax)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 오고 있음

- 이번 조치로 외자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와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은 VAT, 소비세, 사업세의 합계임

- 서울은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는 납세자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고,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은 3%임
-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의 서울은 시(city)는 7%, 현(country)과 향(town)은 5%, 그 외의 지역은 1%임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2호

2011년 1월 24일 인쇄

2011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